

관세연구 24-05

#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소액물품 수입 위반에 대한 처벌 및 규제제도 비교연구

2024. 12.

정재호·노영예

## 연구진

### 연구총괄

정 재 호 선임연구위원

### 연구자

노 영 예 선임연구원

# 목 차

I. 서론 .....	1
II. 주요국의 소액면세 제도 .....	6
1. 우리나라 .....	6
가. 소액면세 제도 .....	6
나. 소액면세 물품 통관 .....	8
2. 미국 .....	12
가. 소액면세 제도 .....	12
나. 소액면세 물품 통관 .....	13
3. EU .....	17
가. 소액면세 제도 .....	17
나. 소액면세 물품 통관 .....	19
4. 중국 .....	21
가. 소액면세 제도 .....	21
나. 소액면세 물품 통관 .....	24
5. 영국 .....	26
가. 소액면세 제도 .....	26
나. 소액면세 물품 통관 .....	30
III. 주요국의 소액물품 수입 위반 처벌 규정 .....	34
1. 우리나라 .....	34

가. 위반 사례 .....	34
나. 소액면세 위반 관련 처벌 .....	37
2. 미국 .....	43
가. 개요 .....	43
나. 소액면세 위반 관련 처벌 .....	45
3. EU .....	47
가. 개요 .....	47
나. 소액면세 위반 관련 처벌 .....	50
4. 중국 .....	58
가. 개요 .....	58
나. 소액면세 위반 관련 처벌 .....	60
5. 영국 .....	66
가. 개요 .....	66
나. 소액면세 위반 관련 처벌 .....	66
IV. 미국과 EU의 소액물품 관련 규제 동향 .....	70
1. 미국 .....	70
2. EU .....	74
V. 요약 및 결론 .....	78
1. 요약 .....	78
2. 결론 .....	80
가. 소액면세 처벌 기준 정비 방안 .....	80
나. 소액면세 제도 정비 필요성 .....	81
다. 기타 행정절차상 고려사항 .....	84
참고문헌 .....	85

## 표 목차

〈표 I-1〉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현황 .....	2
〈표 I-2〉 전자상거래 물품 과세 현황 .....	2
〈표 II-1〉 소액면세 자가사용 인정 기준 .....	7
〈표 III-1〉 밀수출입죄의 위반 및 처벌 내용 .....	39
〈표 III-2〉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6조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 처벌 내용 .....	42



# I. 서론

- 전자상거래는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거래를 의미하며,<sup>1)</sup> 인터넷 사용자의 급증과 스마트폰 보급 확산,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음
  - 특히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2020년 팬데믹의 영향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 2027년에는 전자상거래 부문이 전 세계 소매 판매의 약 4분의 1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됨<sup>2)</sup>
  
-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전체 물품 중 인터넷 쇼핑물 등에서 구입한 물품이 특송 및 국제우편 물품으로 반입된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2019년 약 31억 4,300만달러에서 2023년 약 52억 7,800만 달러로 약 16.8%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약 4만 2,988천건에서 2023년 약 13만 1,443천건으로 약 3배 증가하였음
  
-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우리나라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물품에 대해 관세 행정 비용 절감을 비롯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과세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관세 등의 면세와 간이한 통관 절차를 적용하고 있음

---

1) 정재호, 『주요국의 전자상거래 물품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2. 8. p. 9.

2) Daniela Coppola(2024), "E-commerce as share of total retail sales worldwide 2021-2027,"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534123/e-commerce-share-of-retail-sales-worldwide/>, 검색일자: 2025. 2. 15.

-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형태를 보면 목록통관 비중은 74%, EDI 수입신고(간이신고 및 일반수입신고) 26%로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물품이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반입되고 있음

〈표 1-1〉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현황

단위: 천건/천불

연도	목록통관		EDI 수입신고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	25,549	1,291,953	17,439	1,851,258	42,988	3,143,211
2020	40,722	1,575,044	22,853	2,178,714	63,575	3,753,758
2021	58,553	1,975,198	29,827	2,683,159	88,380	4,658,358
2022	64,500	2,115,609	31,620	2,609,102	96,120	4,724,711
2023	96,929	2,742,239	34,514	2,536,178	131,443	5,278,418

자료: 지표누리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 dx\\_cd=2457](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 dx_cd=2457), 검색일자: 2025. 2. 4.

- 2023년 전자상거래 물품의 과세 현황을 살펴보면 건수 기준 면세통관 비중이 98%, 과세통관 비중이 2%로 소액 면세를 적용받는 물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2019년의 전자상거래 물품 과세 현황을 살펴보면 건수 기준 면세통관 비중이 95%, 금액 기준 면세통관 비중이 73%로, 면세통관의 비중이 높았으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 면세통관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음

〈표 1-2〉 전자상거래 물품 과세 현황

단위: 천 건/천 불

연도	면세통관		과세통관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	41,006	2,230,942	1,982	912,269	42,988	3,143,211
2020	61,011	2,705,608	2,564	1,048,150	63,575	3,753,758
2021	85,283	3,373,872	3,096	1,284,485	88,380	4,658,358
2022	93,402	3,602,295	2,718	1,122,416	96,120	4,724,711
2023	128,898	4,323,600	2,545	954,818	131,443	5,278,418

자료: 지표누리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 dx\\_cd=245](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 dx_cd=245), 검색일자: 2025. 2. 4.

-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라 이와 관련한 다양한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액면세 물품 밀수로 인한 관세사범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음<sup>3)4)</sup>
  - 관세청이 2024년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 608억원으로, 이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110건, 530억원,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이 4건, 19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이 11건, 58억원, 마약사범이 18건, 1억원임
  
- 소액물품과 관련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소액물품 수입과 관련한 범죄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세법 처벌 규정을 논의하고 개정해 오고 있음
  - 소액물품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으로, 타인 명의를 이용해 탁송품이나 우편물을 수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2024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소액물품은 일반 수입물품과 달리 개인의 소액면세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수입 물품에 비해 성격과 금액에 차이가 있음에도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한 형량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어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음
  - 특히 소액물품 범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밀수범의 경우,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이 적용되어 예비범에게도 본죄에 해당하는 처벌이 적용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sup>5)6)</sup>
  
-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는 소액물품 관련 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액물품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3) 관세청, 「해외직구 불법 수입 608억 원 적발, 11월 ‘평균제·블프’까지 특별단속 실시」, 보도자료, 2024. 10. 21.

4) 외교부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안보 review』 24-10호, 2024. 6. 7. p. 5.

5) 『국세신문』, 「밀수입 예비행위를 밀수죄에 준해 처벌하는 것을 위한」, 2024. 10. 16.,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115>, 검색일자: 2025. 2. 15.

6) 밀수입 예비행위로 수입하려던 물품 원가가 2억원 미만일 때는 「관세법」이 적용되어 본죄의 1/2를 감경하는 반면, 2억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됨.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소액면세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소액물품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 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였음
  - 특히 중국의 전자상거래의 성장 속도와 사회·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각국의 규제 강화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먼저 주요국의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소개하고, 소액물품 면세와 관련한 수입 위반에 적용되는 관세 관련법상 처벌 규정 및 소액면세 관련 조사국의 규제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음
  - 송선욱 외(2024)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 분석을 통해 관세행정의 개선방안과 관세사의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라공우(2017)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관세형별 내용에 대해 서술하고 그 차이를 비교하였음
  - 정재호 외(2014)에서는 주요국의 관세법 처벌 규정에 대해 전반적인 법적 성격과 관련 법령의 내용에 대해 조사하였음
  - 정재호(2012)에서는 주요국의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소액물품의 면세 기준, 신고 특례, 물품 위험 관리 등에 대해 제도를 분석하였음
- 주요국으로는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중 중국을 비롯하여 법적 성격에 따라 대륙법계 국가인 EU(독일, 프랑스),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과 영국을 선정하여 조사하였음
- 국가별 소액면세와 관련 처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소액물품 관련 범죄에 대부분 적용되는 금지 물품의 수입, 무신고, 허위신고에 따른 밀수죄와 수입 요건 위반, 부정 수출입 등에 따른 관세 포탈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음
- 다만 국가별 경제 상황 및 문화에 따라 법 체계가 상이하므로, 각기 다른 관세법 처벌

에 관한 형량 및 소액면세 관련 규제에 대한 단순 비교를 통해 개선 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관세 제도적 측면에서 소액면세에 관한 처벌 규정에 접근하고, 향후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가짐
  
- 본 연구는 제I장 서론을 포함하여 총V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II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소액물품 면세 제도 및 통관제도에 대해 조사하였음
  - 제III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소액면세 물품의 수입 위반에 관한 처벌 중 밀수죄 및 관세 포탈죄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음
  - 제IV장에서는 주요국 중 최근까지 제도를 개정해 오고 있는 미국 및 EU의 제도 개정 내용에 대해 조사하였음
  - 제V장에서는 앞의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소액물품 면세 관련 규제를 위해 고려할 사항에 대한 제언을 바탕으로 결론을 작성하였음

## II. 주요국의 소액면세 제도

### 1. 우리나라

#### 가. 소액면세 제도

- 수입물품이나 수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수입하는 경우, 즉 「관세법」상 감면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관세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음
  - 관세는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과세됨
  
- 소액물품 등의 면세 취지는 국제친선 도모 및 무역 원활화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이 있음<sup>7)</sup>
  - 1999년 「관세법」에서 기증 요건을 제외하고 소액면세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통관절차 간소화를 고려하였으며, 교토협약에서 국내 법이 소매가격에 기초해 정한 총액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 선물용품에 대한 관세 및 제세금의 면제(알코올 등과 담배제품 제외)를 규정하고 있음<sup>8)</sup>
  
- 「관세법」 제94조에서는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호에 따라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7) 정재완, 「인터넷으로 구매한 소액 물품 등의 면세」, 『관세와 무역』, 2006년 4월호, 2006.

8)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B 제3장 7(e) 및 동 협약의 이행지침 제3장 부록 2(e)

- 「관세법」 제94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상업용 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 등이 적용 대상임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제2항 제1호의 내용에서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됨

〈표 II-1〉 소액면세 자가사용 인정 기준

종류	품명	자가사용 인정 기준 (면세통관 범위)	비고
농림축수산물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각 5kg	○ 면세통관 범위 초과 경우에는 요건확인 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 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호두	5kg	
	잣	1kg	
	소, 돼지고기	각 10kg	
	육포	5kg	
	수산물 기타	각 5kg	
한약재	인삼 (수삼, 백삼, 홍삼 등)	합 300g	○ 녹용은 검역 후 500g(면세 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 면세통관 범위 초과 경우에는 요건확인 대상
	상황버섯	300g	
	녹용 기타 한약재	검역 후 150g 각 3kg	
오·남용 우려 의약품			○ 국내 의사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총 6병	○ 면세통관 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 대상 - CITES 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 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의약품		총 6병(6병 초과인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약 (한약) 제제	모발재생제 제조환 다편환, 인삼봉황 소염제 구십환	100ml×2병 8g入×20병 10T×3갑 50T×3병 400T×3병	

〈표 II-1〉의 계속

종류	품명	자가사용 인정 기준 (면세통관 범위)	비고	
	소갈환 활락환, 삼편환 백봉환, 우황청심환	30T×3병 10알 30알	단일완제의약품 ○ 건강기능식품이 6병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기호 물품	주류	1병(1ℓ 이하)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 담배는 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 과세 ○ 2종류 이상의 담배를 함께 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만 면세통관 범위 적용 ○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 (예: 60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 인정	
	담배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비
		기타유형 전자담배		110g
	기타담배	250g		
향수	60ml			
기타	○ 기타 자가사용 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 허용 ○ 개별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면세통관 범위 이내이더라도 수입이 제한될 수 있음 - (예시) 야생동물 관련 제품(CITES 규제대상), 마약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 등			

자료: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나. 소액면세 물품 통관

□ 소액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물품(탁송품 포함), 특송물품, 국제우편물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게 되는데, 어떠한 경로를 통해 반입되든 모두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전자상거래사이트

- URL 등이 기재된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임<sup>9)</sup>
-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 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할 경우 수입신고 생략이 가능함
  - 물품가격은 물품 대금에 발송 국가에서 발생하는 세금, 보험료, 운송료가 포함되며,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보험료 및 운임은 제외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별도 과세됨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의 물품 중 배제 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함
- 운송인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sup>10)</sup>
  - 개인(사업자를 제외함)이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은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을 제출해야 함<sup>11)</sup>
  - 특송업체가 목록통관 특송물품을 수입통관하려는 때에는 별표 3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4호 서식의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 통관목록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sup>12)</sup>
    - 물품의 발송인 및 수신인의 성명, 주소, 국가
    -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
    - 타송품의 통관목록에 관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운송업자명, 선

9)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검색일자: 2025. 3. 5.

10)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11)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

12) 「관세법」 제254조의2

박편명 또는 항공편명, 선하증권 번호, 물품수신인의 통관고유부호, 그 밖에 관세 청장이 정하는 사항)<sup>13)</sup>

- 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해서는 안 되며 통관목록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해당 내용을 위반하거나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을 배제할 수 있음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선택적 기재사항이었으나, 타인 명의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 6월 3일부터 필수 기재사항이 되었음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수입신고를 해야 함
- 다음의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함<sup>14)</sup>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 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 화장품에 한함)

13)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14)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및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 적재 물품 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물품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 수신인 성명·물품 수신인 식별부호·거래 코드·공급망 정보·물품 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방송 통신기자재 등으로서 같은 영 별 표 6의2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우편물품의 경우 현장면세 및 통관대상으로 구분되며,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 등 X-ray 검사 결과 우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 물품에 대한 검사 없이 현장에서 면세로 처리함<sup>15)</sup>
- 현장면세 대상 우편물은 다음과 같음<sup>16)</sup>
    - 「관세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물품 등의 면세에 해당하는 물품
    - 관세 등 제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에 따른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
    - 「관세법」 제40조 징수금액의 최저한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물품
    - 그 밖에 면세통관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물품
- 국내 거주자가 특급택송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수입한 물품이 동일 날짜에 여러 개의 물품으로 도착했을 시 다음의 경우 합산과세됨<sup>17)</sup>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물품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15)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호, 제2호

16)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현장면세)

17)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9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sup>18)</sup>
- 합산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150달러, 미국은 200달러)을 초과하면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정식 수입신고 대상으로 전환됨

## 2. 미국

### 가. 소액면세 제도

- 미국의 소액면세와 관련된 내용은 미국 「관세법(United States Code Title 19 Customs Duties Chapter 4)」 및 세부 사항은 「관세법」의 하위 규정인 연방규칙(Code of Federal Regulation Title 19 Customs Duties)에서 다루고 있음
- 1938년,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에 Section 321을 통해 소액면세 제도가 처음 반영되었을 때, 소액물품의 가격 제한은 1달러였으며 미국의 수입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소액물품의 면세 한도는 1978년 5달러, 1993년 200달러, 그리고 2016년 19 U.S.C. 1321(a)(2)(C)를 개정을 통해 800달러로 증액하였음
  - 19 U.S.C. 1321에서는 세금 및 관세 징수에 있어 사소한 불일치를 무시하거나 무관세품에 대한 입장, 면제 금액의 제한에 대해 재무장관은 징수되는 수입액에 비례하지 않는 정부 비용과 이에 따른 불편을 피하기 위해 규정에 따른 권한을 부여받는다 고 규정하여 행정상의 면제를 설명하고 있음

---

18)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는 기존의 조항이 삭제되면서 2022년 11월 17일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미국은 1인당 1일 수출국 소비자가격의 합이 8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들의 묶음에 한하여 면세를 적용하고 있음<sup>19)</sup>
  - 연방규칙에서는 수입 물품액이 800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sup>20)</sup> 항만 책임자가 한 사람이 하루에 수입한 공정한 소매가격이 입증된 물품의 선적에 대해서만 면세로 통관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sup>21)</sup>
    - 단, 선의의 선물(Bona-fide gifts)의 경우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하루에 받은 물품의 총 고정소매가치가 해당 물품의 선적 국가에서 1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버진 아일랜드, 괌 및 미국령 사모아의 당사자로부터 발송된 물품의 경우 200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시 관세 및 세금이 면제됨

## 나. 소액면세 물품 통관

- 미국 연방규칙 19 CFR 143.21에서 비공식적인 통관 절차(Merchandise eligible for informal entry)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2,500달러 이하의 물품을 비롯해 소액면세 물품에 대해 해당 통관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I)항에서는 19 U.S.C. 1321(a)(2)에 따른 행정 면제 대상이며 각 호 사항에 해당하는 물품 발송물에 대한 비공식 통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소액 면제대상 물품이 이에 해당됨
- CBP에서는 2016년 2월 24일부터 Section 321을 지정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품목 중 1인당 1일간 수출국 소비자가격의 합이 800달러 이하인 물품들의 묶음에 대해 목록통관을 허용하고 있음<sup>22)</sup>
  - 적하목록이나 B/L을 제출하여 신고하는 서류 통관 방식으로 ① 제품의 원산지, 송

19) 19 U.S.C. 1321(a)(2)(C)

20) 19 CFR 10.151

21) 19 CFR 10.152

22) KITA,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2058746&siteId=1>, 검색일자: 2025. 2. 3.

- 화인 성명, 주소, 국적 ③ 궁극적 수화인 성명과 주소 ④ 제품의 상세 명세 ⑤ 수량  
⑥ 선적 중량 ⑦ 가격을 기재해야 함
- HTSUS(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미국통합관세율 표)의 소호 또는 납세신고(entry summary)는 Section 321 저가 선적품을 위한 사전적하목록에서는 요구되지 않음
  - 단 요건확인이 필요한 800달러 이하 물품은 정부관계기관(Partner Government Agency, 이하 PGA)의 규정에 따라 일반 또는 간이 수입으로 신고해야 함
    - 주요 수입요건 확인 기관별 해당 품목은 다음과 같음
      - FDA(식약청): 식품,약품, 의료용품, 화장품, 사료용품, 완구류 등
      - USDA(농림부): 농축산물 등
      - NOAA(대기해양청): 수산물 등
      - CPSC(소비자보호안전위원회): 완구, 유아용품, 라이터, 페인트, 자전거 등
      - EPA(환경보호청):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 FCC(연방통신위): 휴대폰, 블루투스제품 등 주파수 발생품목 등
  -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되는 소액면세물품의 경우 CBP에서 물품 판매자 등 세부 정보를 얻지 못해 불법 물품 조사선별에 한계가 있었음<sup>23)</sup>
    - CBP는 목록통관 절차가 느리고 노동 집약적이며, 불법 약물과 같은 범죄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음
  - 2019년 CBP는 Section 321 Data Pilot과 Entry Type 86 테스트라는 두 가지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음
  - Section 321 Data Pilot은 Section 321 선적품에 대해 현재 제출되고 있는 사전

23) Diapiper, "CBP proposes rule that would eliminate Section 321 de minimis exemption eligibility for shipments subject to Section 301 tariffs," <https://www.dlapiper.com/en/insights/publications/2025/01/cbp-proposes-rule-that-would-eliminate-section-321>, 검색일자: 2025. 2. 3.

데이터에 추가로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하여 선적품의 이동, 최종 인수자, 선적품의 내용물을 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25년 8월 운영을 종료할 예정임<sup>24)</sup>

- CBP에 전송해야 하는 공통 데이터들은 Originator Code, 운송인 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같은 참여자의 형태, 선적품 추적번호 또는 House B/L 번호(Master B/L 번호) 중 하나, 운송 형태에 대한 데이터 등임
  - 운송인은 선적품 최초 개시자 성명과 주소, 최종 인도되는 당사자 성명과 주소, 향상된 제품 명세(적하목록에 있는 명세보다 좀 더 상세한 선적품에 대한 명세로, 전자상거래 업체에 기록, 광고된 제품의 명세를 의미함), 항공운송인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선적품 보안 검사 내용, 운송인의 고객 정보와 관련해서 운임의 지속적 지급을 비롯 무역위반 사실이 없는 반복적인 고객으로의 화주를 확인해 주는 지표 요소 등을 추가로 제공해야 함<sup>25)</sup>
  - 전자상거래 기업은 매도인 성명과 주소, 가능한 경우 선적품 최초 개시자 성명과 주소, 최종 배송 당사자 성명과 주소, 온라인 홈페이지의 매도인 계정 번호와 매도인 ID, 가능할 시 매수인 성명과 주소, 플랫폼에 포스팅된 제품 사진, 플랫폼상에서 수입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활성화된 링크, 플랫폼상의 제품 가격 등을 추가로 제공해야 함<sup>26)</sup>
- Entry Type 86은 기존 Section 321 통관과는 달리 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이하 ACE)라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여, CBP와 유관 기관 모두에 소액면세 물품에 대한 보다 높은 가시성을 제공하고자 도입됨
- 저가 선적품에 대해 ACE의 핵심요소인 ABI(Automated Broker Interface)를 통해 Entry Type 86 신고를 전송하게 되며, ABI를 통해 필요한 모든 수입 데이터가 CBP에 전자적으로 전송됨

24) CBP, <https://www.cbp.gov/newsroom/national-media-release/cbp-expands-321-data-pilot-participation>, 검색일자: 2025. 2. 3.

25) 송선욱, 「미국 세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실험 프로젝트 분석과 시사점」, 『관세학회지』 제23권 제2호, 2022, p. 174.

26) 상동

- 소액면세 한도가 2016년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어나면서 소액면세 물품 통관이 급격이 증가하여 전자 통관 방식인 Entry Type 86가 많이 활용되고 있음<sup>27)</sup>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Entry Type 86을 적용할 수 없음
  - 반덤핑 및 상계관세부과 품목(AD/CVD)
  - 쿼터물품(Quota)
  - 「내국세법」에 의해 과세된 물품(Taxed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 담배 및 주류(TTB regulation, such as tobacco and alcohol products)
- Entry Type 86에 대한 절차에 있어 소유자, 구매자 또는 지정된 관세사는 물품의 도착 전 또는 도착 이후 15일 이내에 전자포털에 해당하는 ACE 프로그램을 통해 CBP 양식을 작성해야 함<sup>28)</sup>
  - ① 선화증권 또는 항공물품운송장 번호 ② 신고 번호 ③ 신고할 통관항구 ④ 송화인 성명, 주소, 국가 ⑤ 수화인 성명과 주소 ⑥ 원산지 ⑦ 수량 ⑧ 선적국에서의 공정 소매가격 ⑨ HTSUS 10단위 번호 ⑩ 수화인에 의해 지정될 때 관세사 또는 화주, 구매자의 IOR 번호<sup>29)</sup>
-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 Single Window상의 문서 이미지 시스템(Document Image System, DIS) 등을 통해 유관 기관에 첨부파일을 전자적으로 전송 및 회신할 수 있어 Section 321에 따른 목록통관이 불가능했던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도 통관이 가능함
- Entry Type 86은 CFS 참고<sup>30)</sup>에서 출고하는 경우 상품 처리 수수료(MPF Merchandise Processing Fee)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항만 유지 비용(HMF Harbor Maintenance Fee) 또한 면제됨

27) 송선욱 외,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세행정과 관세사의 대응』, 한국관세사회, 2024. 6, p. 40.

28) 상동

29) Import of Record, 미국 내 수입을 책임지는 개인 또는 법인

30) 컨테이너 화물 작업장(CFS, Container Freight Station)은 LCL(Less-than-container load) 화물을 임시로 처리하고 보관하기 위한 시설

- 철도, 해상, 항공 운송으로 수입되는 저가물품에 대해서는 미 세관이 통관자동화시스템(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에 적절히 송부된 전자 적하목록을 검토 후 통관을 허용하고 있음
- 트럭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소액 적화물의 경우, 일반 검색 통로를 통과함으로써 전자 트럭 적하목록 방식으로 통관함

### 3. EU

#### 가. 소액면세 제도

- 소액물품 면세와 통관 간소화 제도는 「신관세법(Regulation (EU) 952/2013, Union Customs Code, UCC)」,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5/2446) 과 관세감면규정(Council Regulation (EC) 1186/2009에 규정되어 있음
- 제3국으로부터 EU의 수하인에게 직접 발송되는 가치가 미미한(goods of negligible value) 물품으로 구성된 모든 화물은 수입관세가 면제되며, 이때 가치가 미미한 물품은 내재가치가 화물당 총 15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을 의미함<sup>31)</sup>
  - 다음 물품의 경우 상기에 언급된 소액면세가 적용되지 않음
    - 알코올 제품
    - 향수 및 화장수
    - 담배 또는 담배 제품
- 그 밖에 제3국의 개인과 EU 관세 영역에 거주하는 개인 간에 거래되는 물품으로서, 그 가치가 45유로 이하인 물품은 상업적 성격을 띠지 않는 경우에 관세와 부가가치세

31)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23조, 제24조

가 면제됨<sup>32)</sup>

- 면제는 헬골란트섬에서 발송된 탁송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 가끔 발생하는 경우, 물품의 성격이나 수량으로 보아 수취인 또는 수취인의 가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무료로 발송되는 경우에는 상업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탁송품당 45유로까지 면세가 적용되며, 개별 품목의 가격은 분할할 수 없음<sup>33)</sup>
    - 한 번에 배송된 물품의 총 금액이 45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개별 품목이 따로 수입되었을 때 면제가 허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45유로까지만 감면이 적용되지만 개별 품목의 가치는 나눠서 계산될 수 없음
- 해당 소액물품 면세 기준은 술, 담배, 향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 제품의 면세 기준은 다음의 각 물품에 대해 제공된 수량으로 한정됨
- 담배 제품
    - 담배 50개비
    - 시가릴로 25개(개당 최대 3g)
    - 시가 10개
    - 흡연용 담배 50g
    - 이러한 다른 제품들이 비례적으로 구성된 것
  - 알코올 및 알코올성 음료
    - 알코올 도수가 22%를 초과하는 증류주, 변성하지 않은 에틸 알코올이 80% 이상인 것
    - 증류주, 식전주(와인이나 알코올을 베이스로 한 것), 태피아(tafia), 청주(sake) 또는 이와 유사한 음료(알코올의 용량이 22% 이하인 것), 스파클링 와인, 리큐르(liqueur) 와인
    - 스틸 와인 2리터

32)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25조

33)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26조

- 화장품
  - 향수 50g
  - 화장수 0.25
  
- 2023년 5월 17일 발표된 관세동맹 개혁안에 포함된 Council Regulation (EC) 1186/2009의 개정 제안<sup>34)</sup>에서 해당 소액면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sup>35)</sup>

### 나. 소액면세 물품 통관

- 전자상거래 중개업체를 위한 IOSS(Import One Stop Shop) 플랫폼을 통해 EU 회원 VAT 번호를 등록한 후 모든 소액면세 물품에 VAT가 징수됨
  - 판매 시점에 VAT가 부과되었는지 또는 국경에서 징수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소포에 대해 EU 도착 시 세관신고를 요구하며, 판매 시점에 도착지 국의 VAT 요율을 부과하고 IOSS를 통해 납부가 이루어짐
  - 2021년 7월부터 최대 150유로 상당의 물품을 포함한 모든 수입 물품에 디지털 세관신고서가 적용되고 있음
  
- 자유 유통을 위한 세관신고는 UCC DA(Union Customs Code Delegated Act) 제 143a조에 명시된 제약 조건에 따라 소위 대폭 축소된 데이터 세트(super reduced data set)를 사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sup>36)</sup>
  - 수입 금지 및 제한이 적용되는 물품은 H7 데이터 세트와 함께 세관신고서 사용에

34)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amending Regulation (EEC) 2658/87 as regards the introduction of a simplified tariff treatment for the distance sales of goods and Regulation (EC) 1186/2009 as regards the elimination of the customs duty relief threshold

35) EU 집행위원회,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52023PC0259>, 검색일자: 2025. 2. 6.

36) EU Commission, *IMPORTATION AND EXPORTATION OF LOW VALUE CONSIGNMENTS – VAT E-COMMERCE PACKAGE “Guidance for Member States and Trade,”* 2021. 4. 5., pp. 13~14; pp. 30~31.

서 제외되며, H7 데이터 세트가 포함된 세관신고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체 데이터 세트가 포함된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소액물품, 개인 간 거래에 따라 면세를 적용받는 경우, 수입 금지 및 제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 한해 H7 데이터 세트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음
- 기존의 H7 데이터 세트보다 데이터 요소가 3배 더 많은 표준 세관신고서(H1)의 경우 소비세 부과 대상이거나 금지된 물품의 반입에 대해 사용함
- B2C, B2B 또는 C2C 거래에서 물품의 내재가치가 150유로 이하인 경우 C2C 거래에서 물품의 내재가치가 45유로 이하인 경우 적용 가능함
- 우편 물품의 경우 물품의 가치가 1,000유로 이하로 데이터가 간소화된(reduced dataset) H6 데이터 세트가 포함된 세관신고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표준신고서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I1 declaration) 정기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관 당국의 허가가 필요함<sup>37)</sup>
  - H6은 EU 물품에 CN22 또는 CN23 신고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함
- 세관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과소평가가 발견되면 신고가 거부되며, 신고인은 H1 또는 해당되는 경우 H6 또는 I1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새로운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함<sup>38)</sup>

37) Union Customs Code 제166조

38) EU Commission, *IMPORTATION AND EXPORTATION OF LOW VALUE CONSIGNMENTS -VAT E-COMMERCE PACKAGE* "Guidance for Member States and Trade," 2021. 4. 5., p. 67.

## 4. 중국

### 가. 소액면세 제도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제3자 플랫폼 운영자를 통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온라인 쇼핑 보세수입 또는 직접 구매 수입을 통해 중국으로 배송하는 중국 소비자의 소비 행동을 의미함<sup>39)</sup>
- 중국의 첫 관세 관리 전문 법률인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中华人民共和国关税法)」, 이하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이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해당 법률 개정으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었음<sup>40)</sup>
  - 수출입 관세 제·조정, 징수, 납부를 규범화하는 법규를 기존의 조례에서 ‘법률’로 격상하였음
  - 중국 대외무역 발전에 맞춰 관세 관리를 규범화·법제화하고 관세 법정징수(稅收法定)를 전면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 국경 간 전자상거래 관세 납부 의무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중국 수출입 발전 동향에 따른 관세 제도를 구축하였음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에 종사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물류기업, 통관업체 및 법률·행정 법규에 따라 관세 및 세금을 징수할 의무가 있는 업체와 개인을 관세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함
- 2016년 중국 정부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목록(跨境电商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清单)에 포함된 품목만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39) 关于完善跨境电商电子商务零售进口监管有关工作的通知商财发[2018]486号,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18-12/31/content\\_5437823.htm](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18-12/31/content_5437823.htm), 검색일자: 2025. 2. 4.

40) 성희현·김성애, 「중국 ‘관세법’ 주요 내용 및 시사」, 『KOTRA 경제통상 리포트』, 제24-4호, KOTRA, 2024. 5. 7., p. 5.

트 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해 오고 있음

- 2022년 1월 28일, 재무부를 포함한 8개 부처 및 위원회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목록 조정을 공고했으며, 목록에 없는 물품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물품으로 수입이 금지됨<sup>41)</sup>
  - 중국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에 대한 포지티브 목록은 와인, 음료, 조미료, 식용유, 유제품 및 꿀과 같은 적격 식품임<sup>42)</sup>
    - 2022년 목록 조정을 통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 가능한 상품 목록에 스키용품, 가정용 식기세척기, 토마토주스 등 29개 품목을 추가하였음
  - 중국 영토로 운반 또는 배송이 금지된 동식물 및 그 제품 및 기타 검역 품목 목록에 따르면 육류 제품, 멸균우유, 마요네즈, 새 등지 및 기타 식품은 우편, 속달 우편 및 국경 간 전자상거래 직접 구매 및 수입을 통해 중국에 반입될 수 없음<sup>43)</sup>
  - 일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식품은 설탕이 1인당 연간 2kg을 초과하지 않는 것, 1인당 연간 쌀이 20kg을 초과하지 않는 등 개인의 연간 구매 횟수에 제한이 있으며, 이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목록의 비고란에서 조회할 수 있음
- 해외 수입품의 수량이 개인의 합리적인 사용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 수입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며, 규정된 금액 내의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해외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sup>44)</sup>
  - 해외 수입품에 대한 간이과세 방법과 면세액은 국무원이 정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41) 샤먼 세관, [http://xiamen.customs.gov.cn/xiamen\\_customs/grxfcjsfw/4005575/index.html](http://xiamen.customs.gov.cn/xiamen_customs/grxfcjsfw/4005575/index.html), 검색일자: 2025. 2. 15.

42) CCTV, <https://news.cctv.com/2024/06/14/ARTIECOMSt7LJY5Z7m7pUDlP240614.shtml>, 검색일자: 2025. 2. 4.

43) Sina, <https://news.sina.com.cn/minsheng/2024-06-18/doc-inazcetr5642655.shtml>, 검색일자: 2025. 2. 4.

44)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제5조

-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제32조에서는 수출입 물품과 해외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기타 물품 및 해외 수입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개인이 수입하는 품목이 관세 부과액 기준으로 50위안 미만의 세액이 산출된 경우 세관은 이를 면제하나 개인 사용 물품으로 허가 받은 후 수량 제한을 초과할 시 별도의 수입세가 부과됨<sup>45)</sup>
  - 중국은 지역에 따라 물품의 한도 금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홍콩, 마카오, 대만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의 한도 금액은 1회당 800위안이며, 기타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의 한도 금액은 1회당 1,000위안으로 제한하고 있음<sup>46)</sup>
  -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품 규정에 따라 반송 절차나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소포에 1개의 물품만 있고 분리 불가한 물품으로 규정 한도를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관심사 후 개인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개인 물품 통관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에 대한 세금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关于完善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税收政策的通知, 2018년 제45호)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의 1회 거래 한도는 5,000위안이고 연간 거래 한도는 2만 6,000위안임
  - 1회 거래 한도 5,000위안을 초과하지만 연간 거래한도 2만 6,000위안 이내라면, 주문서에 단 하나의 물품만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수입할 수 있음
  -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는 물품 세율에 따라 전액 부과되고 거래액은 연간 거래 총액에 포함되지만 연간 거래 총액이 연간 거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 수입으로 관리됨<sup>47)</sup>
    - 해당 통지에 따라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의 1회 거래 한도액이

45)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징수 조례」, 2024년 조세위원회 공고 제11호 제13조

46) 상해세관, [http://shanghai.customs.gov.cn/shanghai\\_customs/xbszn/kajg29/yddqtjcwptg/2876976/index.html](http://shanghai.customs.gov.cn/shanghai_customs/xbszn/kajg29/yddqtjcwptg/2876976/index.html), 검색일자: 2025. 2. 3.

47) 다롄세관, [http://gongbei.customs.gov.cn/dalian\\_customs/zfxxgk75/460678/3456127/6318845/index.html](http://gongbei.customs.gov.cn/dalian_customs/zfxxgk75/460678/3456127/6318845/index.html), 검색일자: 2025. 2. 4.

2,0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연간 한도액이 2만위안에서 2만 6,000위안으로 확대되었음

- 한도액 초과 시 관세, 증치세(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부과하며 한도액 내 해외직구에 대해서는 관세를 제외하고 구매 금액(증치세+소비세)×70%의 해외직구 수입 세율을 적용함
- 기타 WTO의 국가별 무역정책보고서인 *Trade Policy Review China 2021*에 따르면 물품으로 1인당 하루 8,000위안 미만의 가치를 가진 수입물품에 대해서(goods imported for daily use and valued at less than CNY 8,000 per person per day) 관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국경 무역에 적용되는 수입 면세 허가 기준으로 보임<sup>48)</sup>
  - 국경무역은 육로 국경으로부터 20km 이내의 국경 지역에서 국경 인민이 정부에서 허가한 개방 지점이나 지정된 시장에서 규정된 금액 또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물품 교역 활동을 의미함<sup>49)</sup>
  - 국경 인민이 상호시장무역을 통해 수입하는 생필품(국경 인민이 상호시장에서 수입하는 물품 목록에 포함되어 세금이 면제되지 않는 물품은 제외)의 1인당 일일 가치가 8,000위안 미만인 경우 수입 관세를 비롯한 제세금을 면제함
  - 가치가 8,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수입 관세 및 제세금이 부과됨

## 나. 소액면세 물품 통관

- 중국 법제상 국경 간 전자상거래 유형은 보세수입, 직구수입, 일반수출, 특수구역 내 수출의 네 가지 모델로 분류되며, 직구수입 통관 절차와 보세수입 통관 절차가 소액

48) 边民互市贸易管理办法 (海关总署第56号令), <http://qingdao.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356574/index.html>, 검색일자: 2024. 2. 3.

49) 边民互市贸易管理办法 (海关总署第56号令), <http://qingdao.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356574/index.html>, 검색일자: 2024. 2. 3.

면세에 관한 간소화된 통관 절차에 해당됨

- 온라인 보세수입<sup>50)</sup>은 중국 세관의 특별감독구역 또는 보세 감독 장소에서 포지티브 목록에 있는 외국 물품을 일괄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의미함<sup>51)</sup>
  - 과징(跨境) 제도는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Cross-Border E-Commerce)를 활성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과징은 중국어로 ‘국경을 넘는다’는 뜻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보다 간편하게 통관하고 과세하는 방식임
  - 과징 제도에서는 해외에서 수입된 물품을 특별감독구역 또는 지정된 보세물류센터로 먼저 운송한 후, 보세 상태에서 세관에 신고 및 검사를 거친 후 정식으로 통관됨<sup>52)</sup>
  - 과징으로 통관된 물품에는 과징 종합세가 부과되는데, 과징 종합세는 다음 세 가지 세금이 포함된 복합세로 관세율은 0% 또는 낮은 수준에서 적용되며, 중국 증치세는 중국 내 일반 증치세율 보다 낮은 수준에서 부과되고 특정 품목(예: 화장품, 주류 등)에 추가로 소비세가 부과됨<sup>53)</sup>
  - 해당 절차에서 각 주체들은 전자주문서, 결제증명서, 전자운송서 등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한 후 납세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서류에 근거해 물품 검사를 진행하고 세관 검사 후 보세구역에서 직접 통관되어 소비자에게 배송됨
  
- 수입품 직접 구매<sup>54)</sup>는 소비자가 세관과 연결된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외국 물품을 구매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주문정보, 결제정보, 물류정보 등을 세관에 전송하고, 해외 창고에서 직접 물품을 배송한 후 국제 물류 및 유통을 통해 세관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감독 시설로 운송함<sup>55)</sup>

50) 해관 감독관리코드 1210

51) 香港貿易發展局經貿研究, <https://research.hktdc.com/tc/article/MzM1MzIyMjI5>, 검색일자: 2025. 2. 5

52) 장효은·손명희, 「주요국 소액물품면세제도 및 통관간소화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관세무역연구』, 제1권 제1호, 2024. 3., p. 183.

53) 香港貿易發展局經貿研究, <https://research.hktdc.com/tc/article/MzM1MzIyMjI5>, 검색일자: 2025. 2. 5

54) 해관 감독관리코드 9610

- 물품이 관리 장소에 운송된 후 포워더나 대리인이 세관신고서 또는 명세서를 제출하여 통관, 검사 및 검역 절차가 완료되면 소비자에게 배송됨
- 일반적으로 조세 감면 또는 면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납세자는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앞서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가지고 세관에 감면 및 면세의 심사 및 확인의 절차를 거쳐야 함<sup>56)</sup>
- 그러나 다만 관세, 수입 부가가치세 또는 소비세에 대한 세액이 50위안 미만인 물품의 경우 수입 및 수출물품은 세금이 면제되어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음<sup>57)</sup>

## 5. 영국

### 가. 소액면세 제도

- 영국은 재무부(HM(Her Majesty) Treasury) 산하 관세행정조직의 정식 명칭은 국세·관세청(Her Majesty Revenue and Customs, 이하 HMRC)<sup>58)</sup> 통관과 관련된 내용, 소액물품 면세 등의 제도는 「관세법(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 「관세감면 규정(The Customs (Reliefs from a Liability to Import Duty and Miscellaneous Amendments) (EU Exit) Regulations 2020)」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관세법」 제19조에 따라 재무부에서는 물품의 성격이나 원산지, 관세율을 결정 짓

55) 香港貿易發展局經貿研究, <https://research.hktdc.com/tc/article/MzM1MzIyMjI5>, 검색일자: 2025. 2. 5.

56)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물품 과세 관리 방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征税管理办法) 제70조  
57) 상동

58) HMRC,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hmrc-organisation-chart/hmrc-organisation-chart-2#executive-committee>, 검색일자: 2024. 11. 8.

는 요소, 물품 수입의 목적, 물품 수입자, 물품 수입의 상황을 참조하여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음

□ 소액물품 면세는 「영국관세율법(United Kingdom Customs Tariff: Reliefs from Import Duty)」 Section 5에서 규정하고 있음<sup>59)</sup>

□ 가치가 미미한 물품(goods of negligible value)에 대해서 관세가 전부 면제될 수 있으며 다음의 기준을 만족해야 함

- 탁송품이 영국 외 국가에서 영국에 있는 한 명 이상의 수취인에게 발송되어야 함
- 물품의 내재가치(Intrinsic value)가 135파운드를 초과할 수 없음
  - 알코올 제품, 담배 또는 담배 제품, 향수와 화장수는 해당 면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물품의 내재가치는 상업용 물품과 비상업용 물품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음<sup>60)</sup>

- 상업용 물품의 경우에는 영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의 물품 가격을 의미하며, 운송비와 보험료(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청구서에 별도로 표기되어 있을 시) 그리고 관련 서류를 통해 세관 당국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기타 세금 및 부과금은 제외함
- 비상업용 물품의 내재가치는 영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 물품에 대하여 지급될 가격을 의미함

□ The Value Added Tax (Postal Packets and Amendment) (EU Exit) Regulations 2018에 따라 135파운드 이하의 물품이 포함된 소포를 영국으로 보내는 해외 공급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물품에 부과되는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sup>61)</sup>

59) HMRC, *UK Reliefs Document Version 1.7*, 2024. 1. 31.

60) HMRC, <https://www.gov.uk/guidance/import-vat-and-customs-duty-on-gifts> 검색일자: 2025. 2. 13.

61) HMRC, <https://www.gov.uk/goods-sent-from-abroad/tax-and-duty>, 검색일자: 2025. 2. 14.

- 영국에 소액면세 물품을 판매하는 해외 판매자의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전통적인 소매업(high street)을 보호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소액물품 면세제도 (Low-Value Consignment Relief, 이하 LVCR)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 특송업체에도 적용됨
  - 해당 규정은 135파운드 이하 물품뿐 아니라 15파운드의 소액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sup>62)</sup>
- 2017년 10월 9일 관세법안: 영국의 미래 관세,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제도를 위한 입법화 백서에서 정부는 영국의 EU 탈퇴 이후 EU 회원국으로부터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다른 국가의 물품에 적용된 것처럼, LVCR의 혜택을 받게 될 경우 세금 잠식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함<sup>63)</sup>
- 영국 수취인이 공급자가 물품의 가치 또는 유형 등을 잘못 신고한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경우, 수입 부가가치세에 대해 연대 및 개별 책임 모두 적용하여 영국 부가가치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 판매 시 판매 시점에 물품이 영국 외부에 있다면 위탁기업 간 판매이고, 고객이 영국 부가가치세 등록 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한 판매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청구함
  - 온라인 업체가 올바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과소 신고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 물품이 영국 내부에 있다면 해외 판매자가 물품이 영국으로 처음 수입될 때 수입 부가가치세 및 관세 납부 책임이 있으며, 물품이 고객에게 판매되면 해외 판매자는 온라인 업체에 영세율로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며(간주 공급) 판매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62) HMRC,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hmrc-impact-assessment-for-the-vat-treatment-of-low-value-parcels/hmrc-impact-assessment-for-the-vat-treatment-of-low-value-parcels>, 검색일자: 2025. 2. 14.

63) 상동

- 선물용으로 수입하는 39파운드 이하의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세관 신고가 완료되어야 하고 영국 외부의 개인이 영국에 있는 개인이나 사람들에게 발송해야 함
  - 영국 내의 어떤 사람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고 생일 혹은 크리스마스 와 같이 가끔씩 반입되어야 함
  - 하나 이상의 개별 패키지가 특정 사람에게 발송되는 경우 물품의 가치가 합산되어 총 금액이 39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수입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총 금액이 135 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가 적용됨
    - 다중 선물 패키지에 두 개 이상의 선물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 각 개인에게 39파운드의 부가가치세 감면이 적용됨
    - 물품은 개별적으로 포장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주소가 적혀 있어야 하고, 세관신고서에 별도로 신고해야 함
    - 지정된 허용 한도 내에서 신고서에 각 개별 품목의 가격이 표시되어 있어야 함
    - 한 패키지에 여러 사람이 사용할 여러 종류의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해당 물품 및 물품의 가격을 별도로 기재해야 함
    - VAT의 경우, VAT 한도인 39파운드의 가치를 합산한 수만큼의 품목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이 제공됨(예를 들어, 패키지에 각각 8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5개 품목이 포함된 경우 5개 품목 중 4개 품목에 대해 감면이 적용되며(4개×8파운드=32파운드), 다섯 번째 품목은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 술이나 담배가 선물용으로 수입되고 각 물품의 내재가치가 39파운드 이하인 경우 한정된 수량에 한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sup>64)</sup>
  - 증류주(알코올의 용량이 22%를 초과하는 것),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80% 이상인 것), 증류주, 식전주(와인이나 알코올을 베이스로 한 것), 테피아(tafia), 청주(sake) 또는 이와 유사한 음료(알코올의 용량이 22% 이하인 것), 스

64) 상동

- 파클링 와인, 강화 와인(fortified wine)의 경우 1리터
- 스틸 와인(still wine)의 경우 2리터
- 켈런(cigaret) 50개비, 시가릴로(cigarillo) 25개비(시가의 최대 무게는 각각 3그램으로 한정), 시가(cigar) 10개비, 흡연용 담배(smoking tobacco) 50그램
- 향수(perfume) 50그램, 화장수(toilet water) 0.25리터

#### 나. 소액면세 물품 통관

- BIRDS(Bulk Import Reduced Data Set)는 단일 수입신고에서 하나 이상의 저가 소포를 신고하며 일반 신고에 비해 간소한 데이터로 통관할 수 있는 간소화 제도임<sup>65)</sup>
  - 2021년 1월부터 LVBI(Low Value Bulking of Imports)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LVBI가 운송서류(House Air Waybill) 1개당 최대 99개의 품목<sup>66)</sup>만 일괄하여 통관할 수 있었다면 BIRDS는 한 번 통관 시 품목 수에 제한이 없음
  -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시 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각 우편물(postal packet)은 영국 외 국가에서 영국에 있는 수취인에게 발송되어야 함(편지, 소포, 패킷, 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타 물품)
    - 수입 시 각 우편물은 수취인이 이용할 수 있는 관세 감면 적용 물품을 포함해야 함
    - 우편물은 HMRC 공지에 명시된 방식으로 수입되어야 함
    - 각 우편물의 가치가 135파운드 이하여야 함
    - 각 우편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부가가치세가 아닌 영국 공급 부가가치세가 적용됨

- 다만 물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BIRDS 통관을 적용받을 수 없음<sup>67)</sup>

65) HMRC, <https://www.gov.uk/guidance/apply-to-import-multiple-low-value-parcels-on-one-declaration>, 검색일자: 2025. 2. 14.

66) 정재호·김미영·김수영, 『주요국의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2. 8., p. 99.

67) 상동

- 소비세 부과 대상 물품
  -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 대상 물품
  - 만국우편조약(Universal Postal Convention)에 따라 발송된 물품
  - BIRDS 통관이 이루어질 때 공동 및 연합 운송 절차에 따라 운송이 해제된 경우
  - 가치가 135파운드를 초과하는 물품
  - 별도의 면허 또는 허가가 필요한 물품
- 해당 제도로 통관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함<sup>68)</sup>
- 수입 및 수출 목적으로 정확한 기록을 4년간 유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목적으로 6년 동안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함
  - 승인 서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될 경우 HMRC에 공지해야 함
  - 대량 신고를 뒷받침하는 전자 적하목록을 보관해야 하며, HMRC 또는 국경관리청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당 목록을 제출해야 함
  - 전자 적하목록에는 화물의 개별 품목과 최종 배송 주소가 식별되어야 하며, 품목 설명, 가격, 수취인 이름 등 세관 통제를 위한 충분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해당 조건과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면 BIRDS 승인을 유지하지 못함
- 약식통관(Simplified Customs Declarations)은 「세관 수입 규정(The Customs (Import Duty) (EU Exit) Regulations 2018」의 규정에 따르면 약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HMRC의 승인을 받아야 함<sup>69)</sup>
- HMRC의 승인을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관세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관세를 성실하게 납부했어야 함
  - EORI 번호 및 추가 신고서 제출을 위해 세관과 연결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함

68) 상동

69) HMRC, <https://www.gov.uk/guidance/using-simplified-declarations-for-imports>, 검색일자: 2025. 2. 14.

- HMRC가 수입신고 서비스와 통신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스템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보(EIDR 전자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된 신고가 진행됨)<sup>70)</sup>
  -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관세 납부 연기 계좌가 있어야 함
  - 사업 활동과 관련된 심각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4년 동안 이루어진 모든 신고서를 기록하고 요청 시 세관에 제공해야 함
  - 서면 절차를 제공하고 유지해야 함
- 약식통관의 경우 간이 국경 신고를 통해 물품의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보충 신고서를 제출하고 최종 보완 신고서를 제출함<sup>71)</sup>
- 간이 국경 신고 시에는 농업 정책 물품, 소비세 물품, 줄기가 제거되지 않거나 벗겨지지 않은 미가공 담배, 일부 또는 전부 줄기가 제거되거나 벗겨진 미가공 담배, 담뱃재에 대해서도 통제물품으로 취급됨
  - 세관 절차 코드, 물품이 통제되는 경우 물품 코드, 출발지 및 목적지, 수취인 및 위탁자, 물품의 종류, 수량 및 포장, 운송 방법 및 비용, 통화 및 평가 방법, 인증서 및 라이선스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물품이 Royal Mail 또는 Parcelforce Worldwide를 통해서 영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적용되며, 발송인은 물품에 세관신고서(CN22 또는 CN23)를 부착해야 함
-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며 패키지와 그 내용물이 발송인에게 반환 또는 압수될 수 있음
  - 세관신고서 양식은 물품이 270파운드 이하인 경우 CN22 양식,<sup>72)</sup> 27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CN23 양식<sup>73)</sup>을 사용함

70) 영국법률정보서비스, <https://www.legislation.gov.uk/ukxi/2018/1248/part/4/chapter/3/made#f00035>, 검색일자: 2025. 2. 14.

71) HMRC, <https://www.gov.uk/guidance/making-a-simplified-frontier-declaration>, 검색일자: 2025. 2. 14.

72) Post Office, <https://www.postoffice.co.uk/mail/customs-forms/CN22-form-guide>, 검색일자: 2025. 2. 14

- 모든 양식에는 발송인에 대한 정보, 물품명세서, 수량, 무게, 가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CN23 양식의 경우에만 상업용 물품일 시 추가적으로 수취인 정보와 HS코드와 원산지를 기재해야 함

### Ⅲ. 주요국의 소액물품 수입 위반 처벌 규정

- 소액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자가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 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품명 위장 위조 물품 밀수입 등으로 해외 직구의 간이 한 통관제도를 이용하여 발생하고 있음<sup>74)</sup>
-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 물품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대부분 밀수 및 관세 포탈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는바, 주요국 또한 해당 처벌에 대한 처벌 근거 및 내용(형량)에 대해 조사하였음<sup>75)</sup>

#### 1. 우리나라

##### 가. 위반 사례

##### 1) 물건을 되파는 사례

- 「관세법」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 관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관세법」 제254조의2 및 시행규칙 제

74)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122697&nttSnUrl=9b474857d90e0ba49267718af1e12d8f>, 검색일자: 2024. 1. 16.

75)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122697&nttSnUrl=9b474857d90e0ba49267718af1e12d8f>, 검색일자: 2024. 1. 16.

79조의2 등에 따라 자가사용물품 중 물품가격이 50달러 이하인 경우 운송업자가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

- (일반 물품)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으로 세관에 정식 수입신고 하지 않고, 목록 통관 또는 국제우편으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해외직구 물품을 온라인 등에서 되팔이하는 행위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sup>76)</sup>
  - 서울세관은 오픈마켓 등에서 해외직구 물품 되팔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중으로, 올해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 국내 '리셀(재판매)' 전용 플랫폼인 온라인 중고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중심으로 직구 되팔이 의심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음<sup>77)</sup>
  - 반품 배송비 절약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되팔이 하는 행위도 세관에서 판매 횡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세법」에 따라 처벌함
  
- 수입할 때에 용도에 맞지 않는 면세를 받았으므로 세관에 적발될 시 수입할 때 고의적으로 수입 목적을 속인 것이 입증되면 「관세법」상 관세포탈죄 및 밀수입죄에 해당할 수 있음<sup>78)</sup>
  
- (중고물품) 중고물품의 경우라 하더라도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물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판매가 불가함
  - 다만 중고로 사용했다는 명백한 입증과 세관에서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물품이 상용목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음

---

76) 관세청, 「해외직구 유의사항 Q&A」, 2023. 12.  
 77) 『한국세정신문』, 「고교생까지 뛰어난 직구 되팔이…관세법 위반 6명 입건」, 2021. 9. 14., <http://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1589>, 검색일자: 2025. 1. 15.  
 78) 관세청, 「해외직구 유의사항 Q&A」, 2023. 12.

## 2) 저가신고 사례

- 구매자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고의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물품의 신고가격을 150달러 이하로 요청하거나, 구매대행 업체가 물품의 신고가격을 150달러 이하로 저가신고 후 발생하지 않는 관세와 부가세를 편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sup>79)</sup>
  - 또한 가격경쟁력을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표기하여 구매자들을 속일 수 있음
  
- 저가신고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발 물품 기준으로 가격을 저가 신고하면서 200달러 이하로 목록통관할 경우에는 밀수입죄, 그 이상으로 신고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저가신고한 경우는 관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음
  -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개인 사용이 아닌 선물로 신고하여 세금 면세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경우
  - 여러 제품을 동시에 구매한 경우, 고가의 제품과 저가의 제품을 묶어서 전체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 구매한 제품을 중고품으로 신고하여 가격을 낮추는 방식
  - 구매 금액과 별도로 발생한 배송비를 제외한 물품의 가격만 신고하는 방식
  - 가격을 조작한 인보이스를 이용해 저가신고 차액에 해당하는 관·부가세를 적게 내는 방식<sup>80)</sup>
  - 여러 품목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한 뒤, 주요 품목만 신고하고 나머지 액세서리나 구성품은 제외하는 방식

79) 이재선·김미정, 『전자상거래 물품의관세 과세상 쟁점사항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10, p. 54.

80) 『세정일보』, 「TV직구 가격 낮춰 신고해 세금 10억원 떼먹은 구매대행업체 적발」, 2024. 4. 26., <http://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4512>, 검색일자: 2025. 1. 16.

### 3) 명의 도용 사례

- 가족, 지인 등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개인이 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세금을 포탈하거나 명의를 이용하여 다수의 주소지로 분산하는 방법으로 수입 요건을 구비 하지 않고 불법 수입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판매할 고가의 와인 등 주류 7,958병, 시가 40억원 상당을 가족, 지인 등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개인이 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주세 등 세금 13억원 상당을 포탈한 사례
  -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다수의 주소지로 분산하는 수법으로 태국산 식품, 화장품 등 3만여 점, 시가 15억원 상당을 관련 법령에 따른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채 불법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태국 식품 판매점 운영자 검거 사례<sup>81)</sup>
  
- 또한 국내 3개 업체가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확보한 국내 소비자 3천여 명의 개인통관번호를 도용해 위조 신발·의류 등 2만 6천여 점(시가 138억원 상당)을 자가사용으로 위장반입을 했지만 법적 근거 조문이 없어 처벌받지 않았음<sup>82)</sup>

## 나. 소액면세 위반 관련 처벌

### 1) 밀수출입죄(제269조)

- 통상 밀수라고 함은 마약류나 총기류와 같이 법에 의해서 수출입 자체가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된 품목을 몰래 수출입하는 경우 및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거나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출입 하는 경우를 통칭함<sup>83)</sup>

81)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nttSn=10069800&nttSnUrl=search>, 검색일자: 2025. 2. 25.

82) 『세정일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불법 해외직구 처벌해야」, 2023. 11. 13.,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1927>, 검색일자: 2024. 1. 16.

83) 김재식, 「관세법상 수출입금지품 관련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지』, 창간호, 2000, p. 88.

- 「관세법」상 밀수출입죄는 금지품 수출입죄, 무신고 수출입죄를 포함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69조상 밀수출입죄는 무신고 수출입죄에 관한 내용이며 금지된 물품의 취득에 관한 것은 「관세법」 제274조 밀수품 취득에 관한 죄에서 다루고 있음
- 수출입금지품을 수출입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관세법」 제234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출입 금지 물품은 다음과 같음
    - ①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③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 수입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sup>84)</sup>
  - 제253조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를 제외하고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
  -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 수출 및 반송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 수출 및 반송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 수출 및 반송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

84) 「관세법」 제269조의2

〈표 Ⅲ-1〉 밀수출입죄의 위반 및 처벌 내용

위반	처벌 내용
수출입 금지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단, 제253조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병과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병과

자료: 「관세법」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 관세포탈죄(제270조)

-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허위신고) 구매 대행자를 포함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관세포탈이나 부정 수출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함)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사전심사의 재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
  
- (수입제한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위장수입)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경우
  
- (부정 수출입)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수출조건 허위 구비)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부정감면)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 (부정환급)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 3)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 다음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며, 밀수출입의 경우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예비한 자의 경우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함
  - 밀수출입에 해당되는 물품
  -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경우

### 4) 명의대여행위죄(제275조의3)

- 탁송품·우편물 수입 시 탁송품 및 우편물로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명의도용 처

벌을 목적으로 처벌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하고자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2024년 12월부터 반영하고 있음<sup>85)</sup>

-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자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
  - 관세 및 내국세 등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따른 납세 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4)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 금지품 수출입, 밀수출입, 관세 포탈, 허위신고 및 교사·방조·미수범에 대해서는 위반 관련 금액이 고액일 시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특히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그 정범(正犯) 또는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수입하려던 물품의 원가가 2억원 미만인 때에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 2호, 「관세법」 제271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경한 범위에서 처벌을 받게 되나,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기수죄와 동일하게 처벌됨

85)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관세법』, 2024. 7. 25.

〈표 III-2〉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6조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 처벌 내용

위반 내용	처벌 규정
금지품 수출입죄 (「관세법」 제269조 제1항)	<p>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며 본죄의 미수범도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해 처벌함</p> <p>-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p> <p>-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p>
밀수입죄의 가중처벌(「관세법」 제269조 제2항)	<p>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며 본죄의 미수범도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해 처벌함</p> <p>-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p> <p>-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p>
밀수출죄의 가중처벌(「관세법」 제269조 제3항)	<p>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수출 또는 반송한 물품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며 본죄의 미수범도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해 처벌함</p>
관세포탈죄의 가중처벌(「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동조 제4항, 동조 제5항)	<p>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며 본죄의 미수범도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해 처벌함</p> <p>-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p> <p>- 포탈·감면·면탈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p>
허위 신고죄의 가중처벌(「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	<p>수입제한 회피를 위한 거짓신고 또는 수입요건 미구비 또는 부정구비죄를 범한 자는 수입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며 본죄의 미수범은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해 처벌함</p> <p>- 수입한 물품 원가가 5억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p> <p>- 수입한 물품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p>
교사범·방조범·미수범의 죄 (「관세법」 제271조)	<p>교사범·방조범·미수범의 죄는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해 처벌하며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으로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허위신고죄, 미수범 등(「관세법」 제269조 혹은 제271조)의 죄 또는 밀수품의 거짓취득죄(제274조)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p>

자료: 정재호·김수영·노영예, 『주요국의 관세법 처벌 규정에 관한 연구』, 2014. 9., p. 23에서 재인용 및 수정

## 2. 미국

### 가. 개요

- 소액물품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인하여 CBP가 미국의 무역 관련 법 및 건강 및 안전 요구사항, 지적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규칙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음<sup>86)</sup>
  - 또한 소액물품의 경우 제출 데이터가 제한적이어서 CBP가 펜타닐과 합성약물 원료 및 관련 제조장비와 같은 불법 합성약물의 미국 내 반입을 표적화하여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전자상거래의 확장에 따라 소액물품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10월 기준 소액물품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5년 약 1억 3,900만건의 200달러 이하 소액물품이 미국으로 수입되었음
  - 2017년 소액면세 기준이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 후 저가 선적은 약 3억 2,500만건에 달했으며 2022년도 말에는 6억 8,500만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
  - CBP는 2024년 기준으로 2023년 약 280만건에서 약 120만건 증가한 약 400만건의 소액물품을 처리하고 있음
  - 소액물품 면세를 주장하는 소포는 10억개 이상으로, 이는 2019년의 두 배 수준임<sup>87)</sup>
  
- 2023년도 CBP가 보건 및 안전 위반으로 압수한 물품의 85%는 소액물품이었으며, 미국 내 소비자를 비롯하여 미국 경제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음<sup>88)</sup>

86) Federal Register,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1/21/2025-01074/trade-and-national-security-actions-and-low-value-shipments#footnote-5-p6854>, 검색일자: 2025. 2. 12.

87) KITA, <https://www.kita.net/board/tradeNews/tradeNewsDetail.do?no=1837789>, 검색일자: 2024. 1. 22.

- 2023년 부적격 화물에 대해 CBP가 취한 조치는 대부분 소액물품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모든 화물 유형에 걸쳐 10만 7,300건의 압수 중 9만 3,065건이 소액물품에 해당하였음
  - CBP는 민간 부문이 기대하는 통관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불법 소액물품을 타겟팅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소액물품은 일반적인 수입물품 규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관 및 국경 당국의 검사를 받을 확률이 낮아 마약 운반책과 위조품 밀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통경로가 되었음<sup>89)</sup>
- 저가물품의 대부분은 항공으로 운송되지만, 소액물품은 트럭, 철도, 해상 등 모든 운송수단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옴
  - 이러한 폭발적인 물량을 악용하여 위조품, 위험한 마약, 펜타닐 및 기타 합성마약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전구체 화학물질과 알약 프레스 및 금형과 같은 재료를 포함한 기타 불법 물품을 유통하는 불법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음
    - 2022년 3월에는 러시아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생존 식사용 소액면세 패키지 물품에 총기류를 숨겨 우편으로 반입한 사건이 있었으며, FDA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했음
- 저가수출품의 우회 수출에 취약한 산업은 특히 미국 섬유 및 의류 제조산업으로, 대량의 중국산 섬유 및 의류 수입품이 소액 면세를 신청하여 관세를 회피하고 있음<sup>90)</sup>
- 소액 직구물품의 절반은 의류로, 중국 패스트 패션<sup>91)</sup> 기업에 큰 타격을 입은 미국 섬유 업계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88) CBP, <https://www.cbp.gov/frontline/buyer-beware-bad-actors-exploit-de-minimis-shipments>, 검색일자: 2025. 1. 22.

89) CBP, <https://www.cbp.gov/frontline/buyer-beware-bad-actors-exploit-de-minimis-shipments>, 검색일자: 2025. 1. 22.

90) Federal Register,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1/14/2025-00551/entry-of-low-value-shipments>, 검색일자: 2025. 2. 12.

91) 최신 유행을 즉각 반영한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 빠른 상품 회전율이 특징

- 2022년 기준으로, 2021년에 미국으로 수입된 1,840억달러 상당의 의류 중 CBP가 압수 및 검사한 비율은 1/5에 불과함<sup>92)</sup>

## 나. 소액면세 위반 관련 처벌

- 미국의 연방 「형법 및 형사 소송법(Crimes and Criminal Procedure)」은 제18장에 편성되어 있으며, 제27장의 통관(Customs)에서 「관세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인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미국 「연방 형법 및 형사 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관세법」 위반에 대한 형벌은 Chapter 27의 제541조 내지 제55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은 형법 총칙 배제에 관해 별도의 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관세법」에도 「연방 형법 및 형사 소송법」의 규정 및 그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됨
  - 미국의 「연방 형법 및 형사 소송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예비죄를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예비를 기수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음<sup>93)</sup>
- 다음의 허위분류 및 허위진술과 관련한 각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을 시 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함
  - (허위분류) 고의로 물품 또는 물품의 실제 중량 또는 치수보다 적게 또는 품질이나 가치에 대해 거짓으로 분류하거나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관세보다 적게 납부하여 반입한 경우<sup>94)</sup>
  - (허위진술) 허위 또는 거짓 송장, 신고서, 진술서, 편지, 서류 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 또는 사기적 관행으로 물품을 반입하거나 또는 그러한 진술의 진실을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고서에 허위진술을 하거나, 진술의

92) KITA, <https://www.kita.net/board/tradeNews/tradeNewsDetail.do?no=1837789>, 검색일자: 2024. 1. 22.

93) 법무법인 광장, 『관세형법의 개선방안』, 2009, p. 38.

94) 18 U.S.C. 541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sup>95)</sup>)

- (관세 미납 물품의 수입) 세관공무원으로서 고의로 적법하게 납부해야 할 관세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물품, 물품 또는 물품을 반입한 사람은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하고 직위에서 해임됨
- (밀수출입) 다음의 밀수입과 관련된 죄를 범하는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하여 처벌하고 관련 물품 및 이익은 몰수하며 밀수출의 경우<sup>96)</sup> 10년 이하의 벌금,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함
  - 물품을 밀수입하거나 은밀히 반입하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위조 또는 사기 송장이거나 기타 문서 또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세관을 통과하거나 통과를 시도하는 경우<sup>97)</sup>
  - 법률에 위배되는 물품을 사기 또는 고의로 미국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거나, 법률에 위배되어 수입 또는 반입된 것임을 알면서 수입 후 그러한 물품을 수령, 은닉, 구매, 판매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운송, 은닉 또는 판매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
- 금지품 수출입(위험 물질, 총기류, 담배, 음란물, 지적재산권 위반물품 등) 위반에 대한 조항은 「연방 형법 및 형사 소송법(18 U.S.C)」 내에 산재된 형태로 규정되어 있음
- 미국 「연방 형법 및 형사 소송법」은 중죄의 경우 범죄 형량에 따라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관세 관련 위반에 대해서 물품 밀수(Class C)를 제외한 5년 미만의 징역형(Class E)이 부과되고 있음<sup>98)</sup>
  - 중죄와 관련한 벌금은 개인의 경우 최대 25만달러, 법인의 경우 최대 50만달러까지 부과됨

---

95) 18 U.S.C. 542

96) 18 U.S.C. 554

97) 18 U.S.C. 545

98) 18 U.S.C 3559

- 미국의 「관세법」에서는 「관세법」의 각종 절차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민사적인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 원산지 표시 훼손, 선장, 차량 책임자, 항공기 기장 등의 위조 또는 변조된 적하목록 제출, 자진신고에 따른 형의 경감, 기타 FTA 관련 처벌 등에 대해 민사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 3. EU

#### 가. 개요

- 2023년 150달러 한도 이하로 EU 역내로 수입된 품목은 23억개 약 280억유로의 가치를 기록했으며, 2024년 4월에는 수입된 소액물품의 양이 35만개를 돌파하여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음<sup>99)</sup>
  - 이는 2023년 총 EU 수입 가치의 약 1%를 차지하며, 약 80%가 중국에서 발송되었음
  -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말까지 약 40억개의 소포가 EU로 수입될 것으로 예상하였음<sup>100)</sup>
-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150유로 미만의 물품에 대한 현행 수입 관세 면제 규정으로 인해 전자상거래로 인한 다양한 사기 범죄가 발생함<sup>101)</sup>
  - EU로 들어오는 소포의 65%가 세관 신고 시 고의로 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면세 혜

99) 중국전문가포럼, 「[서구권] EU, 이번엔 中 알리·테무·쉬인 겨냥 ... 온라인 저가상품에 관세 부과 검토」,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54429&mid=a20200000000&board\\_id=2](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54429&mid=a20200000000&board_id=2), 검색일자: 2025. 1. 21.

100) EU집행위원회, [https://home-affairs.ec.europa.eu/news/e-commerce-security-and-counter-terring-illicit-transactions-2024-07-19\\_en](https://home-affairs.ec.europa.eu/news/e-commerce-security-and-counter-terring-illicit-transactions-2024-07-19_en), 검색일자: 2025. 1. 29.

101) 『매일경제』, 「알테쉬 공세 더는 못참아 ... EU, 150유로 미만 무관세 폐지」, 2024. 7. 4., <https://www.mk.co.kr/news/world/11059060>, 검색일자: 2025. 2. 15.

택을 누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낮은 판매 가격으로 경쟁하기 어려운 EU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현행 면세 제도는 판매자가 EU로 물품을 보낼 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큰 물품을 분할로 나누도록 장려하여 EU 역내 기업에 불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음
- UCC(Union Customs Code, 이하 UCC)는 회원국이 UCC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규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EU 법률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처벌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허가하되, 이는 비례성, 효율성 및 설득력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회원국은 규정의 적용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 규정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후속 개정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함
- 관세법의 조사와 처벌에 대한 「형사법」의 적용과 집행에 대해서는 EU가 아닌 개별 회원국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UCC는 관세법 등에 대한 조사 및 기소를 포함해, 형벌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각 회원국 법령에 위임하였음<sup>102)</sup>
  - EU 집행위원회는 2013년 12월 13일, 세관에 대한 침해(infringement)와 처벌(sanction)에 대한 통일 지침 마련을 위한 제안(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Union Legal framework for customs infringements and sanctions)을 발표하였으나, 아직 관세 관련 법 및 규정상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의 삽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EU의 경우 국가 간 관세법 처벌에 대한 체계가 상이하여 EU 차원에서 관세법에 대한 형벌체계를 통일하고자 지속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옴
- 2023년 6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각 회원국의 관세 법 등에 대한 처벌 동향 보고서

102) 『조세금융신문』,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EU 진출의 관문, EU 관세법 알아보기③」, 2024. 8. 19., <https://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68042>, 검색일자: 2025. 2. 5.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Country Sheets Accompanying the document Report from the Commission on the assessment of customs infringements and penalties in Member States Union Customs Code)를 살펴 보면, 각 회원국마다 처벌의 기준과 그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 회원국 간 처벌은 금전적 처벌, 징역 또는 물품 몰수, 허가 취소와 같은 다른 유형으로 부과됨
  - 가장 큰 차이점은 일부 국가는 행정 처벌을 부과하는 반면 다른 국가는 형사 처벌을 부과하여 처벌의 심각성, 벌금 금액 또는 징역형에 있어 국가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임
- 체코 공화국과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에서는 세관 관련 법의 고의적 위반과 과실로 인한 위반을 구분하며, 고의적 위반과 과실을 구분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주로 행정 처벌을 적용하고 있음
  - 형사 및 행정 처벌(행정 벌금, 범죄적 성격의 벌금, 징역을 의미함) 적용국: 오스트리아, 그리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헝가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 형사 벌금 또는 징역 적용국: 벨기에, 키프로스, 프랑스, 룩셈부르크, 몰타, 폴란드, 덴마크
  - 행정 벌금 적용국: 체코,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 EU 차원의 벌금과 과태료는 오랫동안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UCC 개정안('the Proposal' or MUCC(생략) 'Modernized Union Customs Code, 이하 MUCC') 제42조에서 관세 관련 위반에 대한 제재의 근거를 도입하고자 하였음<sup>103)</sup>

- 제안서에서는 제재를 언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곽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재의 민감한 특성상 회원국이 관할권을 갖는 사안에 대해 비형사적 제재

103) Deloitte, <https://www.deloitte.com/be/en/services/tax/blogs/eu-proposal-for-a-modernised-union-customs-code.html>, 검색일자: 2025. 2. 17.

(MUCC 제245조)로 통제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MUCC 제250조)

- MUCC 제252조에서는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거나 유효하지 않거나 인증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위조된 정보 또는 문서를 세관에 제공하는 행위와 같은 관세 위반을 정의하고 있음
- 회원국은 세관 위반을 구성하는 추가적인 행위 및 부작위를 규정할 수 있으며 벌금과 관련하여 MUCC 제247조는 선의와 같은 정상 참작 및 감경 사유를 인정하고 있음
- MUCC 제248조는 관세 위반 책임자가 이전에 관세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거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세 위반을 저지른 경우와 같은 가중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MUCC 제253~254조는 제249조의 제한 기간(5~10년) 내에 적용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비형사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 제재는 고의가 있는 경우 미납 관세의 100~200%, 그렇지 않은 경우 30~100%를 벌금 형식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나. 소액면세 위반 관련 처벌

### 1) 독일

- 독일은 조세에 관한 통칙법인 「조세기본법」에서 조세와 관세에 함께 적용되는 처벌, 벌금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독일 「조세기본법」은 「형법」 총칙 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조세범죄에 대해 조세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형법(Strafgesetzbuch, StGB)」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예비죄를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예비죄를 기수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내용 또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조세포탈죄에서 규정하는 내용의 경우 범죄를 예비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음<sup>104)</sup>

- 미수범의 경우 조세포탈 및 조세은닉죄에 한해 적용하고 있으며 「형법」상 미수범이 경우 실제 범죄 형량에 비해 보다 관대하게 처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sup>105)</sup>
- (조세포탈죄) 「조세기본법」 제370조에서 조세포탈(tax evasion)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monetary fine)을 부과함
  - 세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해 당국에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 제공,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대해 세관 당국에 통지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수입인지(revenue stamp) 또는 수입인지 기계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sup>106)</sup>
    - 세금의 미과세, 전액 과세되지 않거나 기한 내에 과세되지 않은 경우 감면된 것으로 간주되며, 잠정 과세되거나 검토 대상인 경우 또는 세금 신고가 검토 대상 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됨<sup>107)</sup>
    - 세금 혜택도 세금 환급에 해당하며, 세금 혜택을 부당하게 부여받거나 보유하는 경우 부당한 세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됨
    - 위반과 관련된 세금이 다른 사유로 감면될 수 있었거나 다른 사유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도 조세포탈죄로 처벌됨
- 다음의 중한 범죄일 경우 6개월에서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sup>108)</sup>
  - 대규모로 세금을 감면받거나 부당한 세금 혜택을 받은 경우
  - 공무원 또는 유럽 공무원으로서의 권한 또는 지위를 남용한 경우
  - 자신의 권한이나 지위를 남용하는 공무원 또는 유럽 공무원의 도움을 이용하는 경우
  - 위조 또는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세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부당한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

104) 법무법인 광장, 『관세형법의 개선방안』, 2009, p. 31(내국세와 관련하여 납세증지와 관계된 인지 위조행위의 예비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만 두고 있음).

105) 독일 「형법」 제23조 제2항

106) 독일 「조세기본법」 제370조(1)

107) 독일 「조세기본법」 제370조(4)

108) 독일 「조세기본법」 제370조(3)

-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구성된 집단의 일원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소비세 혜택을 얻은 경우
  - 조세 관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단독으로 또는 개인과 함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력 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국 회사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당한 조세 혜택을 계속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금지품 수출입) 조세포탈죄에 있어서는 미수범도 처벌하며 수입, 수출 또는 운송이 금지된 물품을 수출입 한 경우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조세포탈죄의 형량과 동일하게 처벌함<sup>109)</sup>
- (영업적·폭력적·집단적 밀수)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 관세를 회피하거나 전매 규정을 위반한 경우 6개월에서 10년 사이의 징역에 처하고 죄가 가벼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임<sup>110)</sup>
- (조세은닉죄) 소비세 또는 수출입 관세를 회피한 제품 또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수출입 금지물품 위반,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해 이를 조달하거나 처분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도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짐<sup>111)</sup>
- 범죄 행위의 지속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범죄를 행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죄질이 경미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며 미수 행위도 처벌 대상임
- 조세포탈죄, 금지품 수출입, 영업적·폭력적·집단적 밀수, 조세은닉죄의 경우 범죄와 관련된 물품, 운송수단 등에 대해 몰수할 수 있음
- 조세 질서위반(관세질서위반)이란 「조세법」에 따라 과태료(Geldbusse)를 부과할 수

---

109) 독일 「조세기본법」 제372조

110) 독일 「조세기본법」 제373조

111) 독일 「조세기본법」 제374조

있는 위반행위로, 이에 대해서는 조세법의 과태료 규정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의 제1편의 규정을 적용함<sup>112)</sup>

- 과실로 인한 세금 축소 신고의 경우 최대 5만유로 이하의 벌금(monetary fine)에 처해짐<sup>113)</sup>
-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이 아닌 증빙자료를 발행 또는 법률상 기장 또는 기록의무가 있는 거래 사실 또는 사업 운영 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장하거나 이를 시킨 행위를 통해 조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한 조세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5천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sup>114)</sup>

□ 수출입 관련 조세납부의무자로서 또는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에 규정한 사항에 적용되는 「관세법」, 관련된 법규 명령, 유럽공동체의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명령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경우 5천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EU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운송에 대한 관세 당국의 확인, 통관을 위한 물품의 인도 및 실행, 그리고 기타 「관세법」이 규정하는 절차

## 2) 프랑스

□ 프랑스의 관세 관련 위반에 대한 내용은 「관세법(Code des douanes)」, 이하 프랑스 「관세법」 제12편 소송 및 회수(Contentieux et recouvrement)의 제6장 처벌 Dispositions répressives(제408조 내지 제440조)에서 위반에 대한 벌금 및 형벌 내용 및 분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sup>115)</sup>

- 관세 범죄를 저지르려는 모든 시도(attempt)는 범죄 그 자체로 간주되며, 위반 시 벌금은 「형사소송법(code de procédure pénale)」<sup>116)</sup> 제707조의6이 적용됨

112) 독일 「조세기본법」 제377조

113) 독일 「조세기본법」 제378조

114) 독일 「조세기본법」 제379조

115) 프랑스 「관세법」 제408조

116) 프랑스 법률정보 홈페이지, “Code de procédure pénale,”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texte\\_lc/LEGITEXT000006071154/](https://www.legifrance.gouv.fr/codes/texte_lc/LEGITEXT000006071154/), 검색일자: 2025. 2. 17.

- 벌금이 부과되는 비교적 경미한 관세 위반은 제410조 내지 제413조 (b)에서 5단계 (5 classes)로 분류하고 있으며, 관세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제414조 내지 제416조에서 3단계(3 classes)로<sup>117)</sup> 분류하여 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의 차등을 두고 있음<sup>118)</sup>
- (1단계) 본 법에서 금지하는 물품이나 제조된 담배 제품과 관련된 밀수 행위와 신고 없이 수출 또는 수입한 행위는 다음과 같이 처벌됨<sup>119)</sup>
  - 3년의 징역, 사기 목적의 몰수, 운송수단의 몰수, 사기를 은폐하는 데 사용된 목적의 몰수, 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되었거나 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사용된 물품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선의의 소유자의 권리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물품의 몰수, 범죄의 직간접적 산물인 물품 및 자산의 몰수 및 사기 목적의 가치의 1배에서 2배 사이의 벌금으로 처벌됨
  - 세부 항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제시된 물품에 적용되지 않는 세부 항목을 신고한 뒤 수출하거나, 세관 검사에서 물품을 은폐하여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원산 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형량이 적용됨
  - 프랑스령 기아나의 관세 반경 내에서 도착 금을 보관하거나 운송하는 경우, 운송 서류나 관세 영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발급한 서류 또는 도착 금이 합법적인 수출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형량이 적용됨
- 밀수, 수입 또는 수출 행위가 유럽 규정에 의해 이동이 제한되는 민간 및 군용 이중용도 물품과 관련된 경우 징역형은 최대 5년으로 늘어나고 벌금은 물품가액 최대 3배까지 부과될 수 있음<sup>120)</sup>

117) 관세법의 경우 3단계, 벌금의 경우 4, 5단계에 대해서는 밀수 및 관세포탈죄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생략하였음.

118) 프랑스 「관세법」 제409조

119) 프랑스 「관세법」 제414조

120) 상동

- 밀수, 수입 또는 수출이 건강, 도덕 또는 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품의 경우 징역형은 10년으로 늘어나고 벌금은 물품가액의 최대 10배까지 부과될 수 있음<sup>121)</sup>
- 상기에 규정된 물품이 아닌 물품에 관하여 고의로 밀수행위 또는 무신고로 수출입한 행위는 5년의 징역과 물품 가액의 1배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sup>122)</sup>
  - 환불, 면제, 관세 감면 또는 수입이나 수출에 수반되는 재정적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도적인 허위신고, 허위, 부정확 또는 불완전한 문서 사용 또는 문서 제공을 실패한 경우
  -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10년의 징역과 물품가액의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이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기 목적의 몰수, 운송수단의 몰수, 사기를 은폐하는 데 사용된 물건의 몰수, 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되었거나 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사용되었던 재산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재산이나 선의의 소유자의 권리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재산 및 자산을 몰수할 수 있음
- (2단계) 수출, 수입, 이전 또는 보상 등을 통해 프랑스와 해외 사이에서 세관공무원이 집행해야 할 법률에 의해 규정된 범죄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자금이나 유럽 연합의 재정적 이익을 침해하는 자금, 또는 마약으로 분류되는 독성 물질이나 식물에 대한 법률 위반에서 발생한 자금과 관련된 금융 거래를 수행하거나 수행을 시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됨<sup>123)</sup>
  - 10년의 징역, 범죄를 저지른 금액의 몰수 또는 압수를 명령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대체하는 금액의 몰수, 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되었거나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던 재산의 몰수, 범죄의 직간접적 결과인 재산 및 자산의 몰수, 범죄 또는 범죄 시도 금액의 1배에서 5배 사이의 벌금에 처함

121) 상동

122) 프랑스 「관세법」 제414-2조

123) 프랑스 「관세법」 제415조

- 이러한 자금이 발생한 활동이 다른 유럽 연합 회원국 또는 제3국의 영토에서 수행된 경우도 포함됨
  - 관세 영역 내에서 수행되는 불법적 출처의 자금의 운송 및 징수.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경우도 포함됨
  - 범죄 시도에 대한 벌금은 조직적 범죄 또는 범죄 시도에 연루된 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부과될 수 있음
- 「통화 및 금융법」 제L.54-10-1조에 언급된 자금 또는 디지털 자산은 수출, 수입, 이전, 보상, 운송 또는 징수 작업의 실질적, 법적 또는 재정적 조건이 통화 및 금융법 제L.54-10-1조에 언급된 자금 또는 디지털 자산이 그러한 출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경우 본조에 규정하는 범죄 중 하나의 직간접적 산물로 처벌함
- (1단계 벌금) 일반적인 행정 위반에 대한 벌금은 300유로에서 3,000유로가 부과됨
- 신고 시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과 관련된 누락 또는 부정확하나 중대하지 않은 경우, 운송인의 운송장 및 적하목록 제출, 포장 등 위반<sup>124)</sup>
- (2단계 벌금) 행정위반으로 관세 또는 세금을 회피하였으나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 징수해야 할 관세 및 세금 금액의 1배에서 2배 사이의 벌금으로 처벌됨<sup>125)</sup>
- 영수증 또는 이를 대체하는 문서에 따라 신고, 명시 또는 운송된 패키지 수의 부족
  - 창고 및 통관 지역이나 수출 창고 및 지역에 배치된 물품 수량의 부족
  - 개인 창고, 특수 창고 또는 산업 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비표시
  - 배송된 물품의 봉인이 훼손되거나 변조된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
  - 보증서 및 입찰에 명시된 약속을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선언된 무게, 수량 또는 측정치를 초과하는 것

---

124) 프랑스 「관세법」 제410조

125) 프랑스 「관세법」 제411조

- 석탄, 천연가스 및 전기를 제외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련 법상 에너지 소비세가 부과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모니터링 및 관리 조치를 준수하지 못하여 가해자가 적용 가능한 것보다 낮은 세율 또는 면제 혜택을 부당하게 누리는 경우
  - 항구세 또는 장비 비용 회수를 저해하는 모든 범죄는 2급 벌금으로 처벌됨
- (3단계 벌금) 관세법 처벌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다음의 경우 분쟁 물품의 몰수 및 300유로에서 3,700유로의 벌금에 처함<sup>126)</sup>
- 제조된 담배 제품, 수입 금지 물품, 국내 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 출국 시 금지 또는 세금이 부과되는 물품과 관련이 없는 밀수 행위와 신고 없이 이루어지는 수입 또는 수출 행위
  - 관세 또는 세금이 허위 신고로 인해 회피되거나 손상되는 경우, 수입 또는 수출되거나 보류 제도에 따라 처리되는 물품의 종류, 가치 또는 원산지에 대한 허위신고
  - 실제 수신인 또는 실제 발송인의 지정에 있어서 허위의 표시가 있는 경우
  - 프랜차이즈에 관한 공동체 규정에서 규정한 혜택을 부당하게 얻는 경향이 있는 허위신고
  - 금지되지 않은 물품을 원래 목적지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행위
  - 여러 개의 베일 또는 기타 폐쇄된 포장물을 어떤 방식으로든 모아서 적하목록 또는 신고서에 단위로 제시하는 것
  - 적하목록의 부재 또는 적하목록 원본의 비표시 물품목록이나 요약신고서에 물품이 누락된 경우 명시되거나 요약적으로 신고된 물품의 본질상의 차이 등

---

126) 프랑스 「관세법」 제412조

## 4. 중국

### 가. 개요

- 중국의 경우 개정된 「관세법」상에서는 원천징수자 의무 위반에 대한 밀수 행위에 대해 세관의 세금 추징 및 과태료 부과, 밀수에 대한 체납금 추징 시 기한과 관계없이 미납부세액을 결정할 권리 등에 대해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음
- 기타 최근 개정 사항으로 세관 총서는 수출입 과정에서의 세관 행정처벌 재량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자 <중화인민공화국 세관행정처벌 재량 기준 I>을 제정하여 발표하였으며, 세관의 재량기준으로 행정처벌 미적용, 감경, 완화, 기중 처벌 등을 분류하여 적용할 수 있음<sup>127)</sup>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행정처벌 재량 기준 II>에서는 상기에 언급한 첫 번째 개정에서 이어 법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간이 절차와 행정처벌 패스트트랙(약식)에 초점을 맞춘 세관의 행정 처벌과 관련된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sup>128)</sup>
  - 해당 통관 절차의 간소화와 일반적인 행정 처벌 사례의 신속한 처리 및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량 기준의 목록에 따라 간이 절차 및 약식 절차 대상 사건은 세관의 재량 기준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간소화 절차의 대상이 아니지만 ①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② 관련 당사자가 서면으로 신청하고 ③ 자신의 잘못과 처벌을 자발적으로 인정하며, 기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행정벌 사건의 경우, 세관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시 증거 수집, 심사 및 승인을 간소화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음
    - 법률, 행정 규정, 세관 규정에서 경고, 최대 3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는 경우
    - 물품의 가치가 50만원 이하/물품의 가치가 10만원 이하(각각의 기준)

127) 关于发布「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裁量基准（一）」的公告

128) 关于发布「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裁量基准（二）」的公告

- 재량 기준의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세관 약식 절차 및 행정 처벌의 신속한 처리 (II)에 근거한 내용
- 수입 또는 수출이 불순물, 위조, 조잡한 물품 또는 부적격 수출입 물품을 적격수출입 물품으로 가장한 경우 물품 검사기관은 수입 또는 수출 중단 후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물품 가치의 50%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무원에서는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후 재판매, 주문자의 신원정보 진위 여부 검토 미비 등으로 인한 개인 신원정보 또는 연간 구매한도가 도용, 기타 세관 감독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처벌 사례로 설명하고 있음<sup>129)</sup>
  - 개인 소비자가 이미 구매한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은 다시 판매할 수 없음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의 허위 거래 및 2차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간에 동일한 구매자, 동일한 결제 계좌, 동일한 배송 주소, 동일한 수취 전화번호를 반복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
- 명의도용에 따른 불법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세관은 이를 밀수 위반으로 처리하고, 시민 정보의 불법 사용에 관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관련 부서로 이송함<sup>130)</sup>
  - 밀수법 위반 혐의가 없고 처음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면담 또는 징직 처분을 내리고 시정 명령을 내리며, 다시 적발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사업에 종사할 수 없음
- 해외 구매대행 범죄에서 행정범죄와 밀수범죄를 구분하는 핵심은 물품 구매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 여부, 그 탈세가 주관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는지에 있음<sup>131)</sup>

129) 중국 국무원,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18-12/31/content\\_5437823.htm](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18-12/31/content_5437823.htm), 검색일자: 2025. 2. 4.

130) 상동

- 물품 밀수죄의 범죄 기준은 두 가지로 탈세 금액이 크거나, 1년 내에 밀수로 인해 두 번째 행정 처벌을 받은 후 다시 밀수하는 경우임
  - 사법 실무에서 후자의 비율은 매우 작으며, 대부분의 일반 물품 및 물품 밀수 사건은 전자에 의해 발생함
  - 금액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가해자가 신고를 은폐해 사치품을 국내로 반입했고, 납부해야 할 금액이 10만위안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밀수 범죄로 「형법」에 따라 처벌됨
  - 일례로 2012년 면세점에서 구매한 화장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국내로 반입해 113만위안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승무원이 일반 물품 밀수죄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
  - 구매대행 행위가 법 위반에 따라 형사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대중들의 경각심을 유발한 사건이었음
- 주관적 의도에 관해 물품을 은닉하거나 위장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 또는 친척 및 친구의 선물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밀수 목적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형사 소송이 쉽게 시작되지 않으며 주로 행정 수단에 의해 처리됨<sup>132)</sup>

## 나. 소액면세 위반 관련 처벌

- 「관세법」과 「세관 행정 처벌 실시 조례(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를 보면 주로 밀수죄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관세형벌에는 벌금, 물품 가치 추징, 불법 소득 몰수, 물품의 몰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sup>133)</sup>

131) 中国法院网, <https://news.qq.com/rain/a/20240806A022UH00>, 검색일자: 2025. 2. 4.

132) 상동

133) 라공우·김희철, 「한국과 중국의 관세형벌 규정의 비교 연구」, 『관세학회지』, 제18권 제1호, 2017, p. 84.

- 한국의 「관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징역형의 경우 「형법」상 범죄로 성립되는 밀수 및 탈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수출입과 관련된 관세형벌에는 징역형이 없어 한국의 관세형벌 규정에 비해 벌칙이 약한 편임<sup>134)</sup>
- 중국 「형법」에서는 주관적으로는 불법적인 경제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있고 객관적으로는 국가의 경제관리제도를 위반한 것에 대해 제3장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파괴죄에서 다루는데, 수출입과 관련된 밀수, 탈세 등이 이에 해당됨

### 1) 「형법」상 밀수 및 탈세죄

- 물품 밀수죄의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그 밖의 직접 책임자를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에 처함<sup>135)</sup>
  - 물품 및 물품을 밀수하여 탈세 및 탈루한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또는 1년 내 밀수로 2차례 행정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밀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동시에 탈세 및 탈루액수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함
  - 죄가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탈세 및 탈루액수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처하며, 특별히 무거운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을 부과하거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및 재산 또한 몰수함
  - 「형법」 제151조에서는 무기 및 탄약 밀수죄, 문화재 밀수, 귀금속 밀수, 희귀동물 및 그 제품의 밀수죄, 국가 수출입 금지 물품 및 물품 밀수죄 등에 대한 별도의 형량을, 제152조에서는 음란물 및 폐기물에 대한 별도의 형량을 규정하고 있음
- 수입세가 감면되는 특정 물품을 반입 후 국내에서 임의로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는 경우 밀수죄에 따라 처벌됨<sup>136)</sup>

134) 상동

135) 중국 「형법」 제153조

136) 중국 「형법」 제154조

- 수입 금지한 물품을 밀수자에게 불법으로 직접 구매하는 경우, 밀반입한 기타 물품·물품을 불법으로 밀수자에게 직접 구매하고 그 액수가 큰 경우, 내해(內海)·영해·경계가 되는 하천 및 호수에서 국가가 수출입을 금한 물품을 운송·매입·판매하는 경우, 국가가 수출입을 금한 물품·물품을 운송·매입·판매하고 그 액수가 크며 합법적 증빙이 없는 경우 밀수죄에 따라 처벌됨<sup>137)</sup>
- 밀수범과 공모하여 차관·자금·계좌·영수증·증명서를 제공하거나 운송·보관·우편 발송 또는 기타 편의를 제공한 자는 밀수죄 공범으로 간주함<sup>138)</sup>
- 탈세죄의 경우 탈세 액수가 비교적 크고 응당 납세하여야 할 액수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에 처하며 액수가 매우 크고 응당 납세하여야 할 액수의 30% 이상에 달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음<sup>139)</sup>
- 중국 「형법」에서는 범죄를 위해 공구를 준비하거나 여건을 조성하는 예비범은 기수범에 비해 경미하게 처벌하거나 작량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미수범은 기수범에 비해 경미하게 처벌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sup>140)</sup>
  - 범행 과정에서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거나 범죄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유효하게 방지한 때에는 범죄의 중지에 해당하여 중지범에 대해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면제해 주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감경함

## 2) 세관 행정 처벌 실시 조례에 따른 밀수, 허위신고 및 탈세 등

- 「세관 행정 처벌 실시 조례」는 2009년 제정되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밀수 행

137) 중국 「형법」 제155조

138) 중국 「형법」 제155조

139) 중국 「형법」 제201조

140) 중국 「형법」 제22조, 제23조

위 및 세관 감독 규정을 위반한 행위 처리에 대한 경미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2년 개정되었음<sup>141)</sup>

- (밀수행위) 「관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세관의 감독관리 회피, 탈세 및 국가의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 관리를 회피하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 밀수로 처벌함<sup>142)</sup>
  - 국무원 또는 국무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관련 기관의 허가 없이 세관이 없는 장소에서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하는 화물, 물품이나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화물, 물품을 운송 및 휴대하는 방식으로 수출입한 경우
  - 세관이 있는 장소에서 통해 은닉, 위장, 기만, 허위 혹은 기타의 방식으로 세관의 감독을 회피하여 수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화물, 물품이나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화물 및 물품을 운송, 휴대, 우편 방식으로 수출입한 경우
  - 위조 또는 변조한 매뉴얼, 서류, 인감, 회계장부, 전자데이터를 이용하거나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세관의 감독을 회피하고 세관이 감독 관리하는 화물, 물품, 수입한 경외 운송도구를 경내에서 판매하였을 경우
  - 위조 또는 변조한 매뉴얼, 서류, 인감, 회계장부, 전자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또는 가공무역 완성품의 단위 재료 소모량에 대한 허위보고 등의 방식으로 세관 감독하의 화물, 물품을 감독하에서 이탈하게 하였을 경우
  - 은닉, 위장, 기만, 허위보고 또는 기타 방식으로 세관의 감독 관리를 회피하여 보세 구역, 수출가공 구역 등 세관의 특수 감독관리 구역 내에서 세관이 감독 관리하는 화물, 물품을 구역 외부로 운반한 경우
  - 세관 감독을 회피해 밀수를 구성하는 기타 행위

□ 다음의 행위 또한 밀수죄<sup>143)</sup>로 처벌함<sup>144)</sup>

141) 「세관 행정 처벌 실시 조례」 2022년 및 세계법제정보센터의 번역본을 확인하여 작성하였음.  
 142) 「세관 행정 처벌 실시 조례」 제7조  
 143) 다음의 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하여 밀수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44) 「세관 행정 처벌 실시 조례」 제8조

- 밀수품 및 물품이 밀수 및 수입품임을 알면서 밀수범으로부터 직접 불법 취득하는 행위
  - 내해, 영해, 국경 강, 국경 호수, 선박 및 선박에 탑승한 사람들이 합법적인 인증 없이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물품 또는 물품을 운송, 취득, 밀매하거나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물품을 운송, 취득, 밀매하는 행위
- (밀수처벌) 밀수 행위에 따라 처벌은 벌금, 몰수 등에 처해지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음<sup>145)</sup>
- 국가의 수출입 금지 물품을 밀수하였을 경우, 밀수 물품 및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100만원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국가에서 출입경을 금지하는 물품을 밀수하였을 경우, 밀수 물품과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10만원안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필요한 허가증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탈세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에서 수출입을 제한하는 물품 또는 물품을 밀수하였을 경우, 밀수물품 또는 물품과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외에 밀수물품, 물품과 동등한 가치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탈세하였으나 허가증 관리를 회피하지 않고 법에 따라 납세해야 할 물품, 물품을 밀수하였을 경우, 밀수물품, 물품 및 불법 소득을 몰수하는 외에 탈세액의 3배에 해당되는 벌금에 처함
- (허위신고) 수출입 물품의 품명, 세척번호, 수량, 규격, 가격, 무역방식, 원산지, 출하지, 도착지, 최종 목적지 또는 기타 신고해야 할 항목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 및 몰수에 처함<sup>146)</sup>
- 세관통계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경고 또는 1,000위안 이상~1만위안 이하의 벌금, 세관 감독관리 질서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경고 또는 1,000위안 이상~3만위안 이하의 벌금, 국가의 허가증 관리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물품가치의 5% 이상~30% 이하의 벌금, 국가의 세금징수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탈세액의 30%

145) 「세관 행정 처벌 실시 조례」 제9조~제11조

146) 「세관 행정 처벌 실시 조례」 제14조

이상~2배 이하의 벌금, 국가의 외화, 수출관세환급 관리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신고 가격의 10% 이상~50%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수출입 물품의 수하인과 발송인이 규정에 따라 세관 신고 기업에 위탁한 세관 신고 사항의 실제 상황을 제공하지 않아 신고 위반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탁인은 상기의 벌금형 및 몰수형에 처해짐<sup>147)</sup>
  
- 소액 개인 물품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 경고 및 해당 물품 가액의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벌금에 외에 불법 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불법 소득을 몰수함
  - 세관의 허가 없는 수입 물품의 개봉, 인도, 전달, 양도 또는 기타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세관의 허가 없이 세관에 의해 아직 해제되지 않은 물품을 개봉, 인도, 전달, 양도 또는 기타 처분하는 경우
  - 개인이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한 개인용 물품을 운송, 휴대, 우편 송부하여 출·입경 시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개인이 규정한 수량을 초과하나 여전히 개인용으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수출입을 제한하는 물품을 운송, 휴대, 우편 송부하여 출·입경 시 은닉, 위장 등 방식으로 세관의 감독 관리를 회피하지 않았으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개인이 물품을 국내 또는 국외로 운송, 운반 또는 우편 발송하면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 세관의 등록을 거쳐 임시 면세 출·입경 물품으로 허가받았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다시 경외 또는 경내로 휴대하지 않았을 경우
  - 세관의 허가 없이 국경을 통과하며 휴대한 물품을 경내에 남겨 두었을 경우

147) 「세관 행정 처벌 실시 조례」 제15조

## 5. 영국

### 가. 개요

- 영국의 관세 관련 위반에 대한 형벌은 「관세 및 소비세법(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입과 관련한 각 행위를 다루고 있는 장에서 별도로 적용되는 형벌 및 벌금에 대해 서술하고 있음
- 「관세 및 소비세법」 제7장 일반 및 기타 일반적인 위반(Part XII General and Miscellaneous General offences)의 제167조에서 제170조까지 일반적인 관세 관련 범죄(General offences)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각 위반에 대해 1971년 「의약품 오사용법」(Misuse of Drugs Act 1971), 「총기법」(Firearms Act 1968), 「위조 및 사기법」(Forgery and Counterfeiting Act 1981), 「바다표범 가죽 수입 규정」(Seal Skins Regulations 1996)에 따라 형량을 별도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위반에 대한 처벌로 조사 범위를 한정하였음
  - 예를 들어 마약의 경우 A~C의 3등급으로 분류하며 분류에 따라 최대 종신형과 무제한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
- 약식재판과 기소로 나누어 처벌하고 있으며 미수의 경우 「관세법」이 적용되는 개별 법상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비범의 경우 처벌하고 있지 않음

### 나. 소액면세 위반 관련 처벌

- 「관세 및 소비세법」 제171조에서는 위반행위 및 처벌에 대해 적용되는(General provisions as to offences and penalties) 일반적인 기준 및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sup>148)</sup>
- 지정된 문제와 관련된 조항에 의거하여 또는 이에 의거하여 행해진 규정, 지시, 조건, 요건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148) 「관세 및 소비세법」 제170조(1)

- 한 사람이 하나 이상의 이러한 범죄, 위반 또는 불충분(failure)에 대해 동일한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은 각각의 범죄, 위반 또는 불충분에 대해 해당 처벌을 받을 의무가 있음

### 1) 허위신고

- 고의 또는 과실(knowingly or recklessly)로 특정 사안에 대해 어떤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진술한 문서 또는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사실이 아닌 경우, 유죄구금될 수 있으며, 해당 문서 또는 진술과 관련된 모든 물품은 몰수됨<sup>149)</sup>
  - 선언, 통지, 증명서 또는 기타 문서를 작성 또는 서명하거나 작성 또는 서명하게 하거나 위원 또는 세관원에게 전달하거나 전달하게 하는 경우
  - 법령에 따라 또는 법령에 따라 답변이 요구되는 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진술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죄를 범한 경우 약식 기소(summary conviction)의 경우 2만파운드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소(conviction on indictment)하여 유죄 판결일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이 부과되거나 2년 이하의 징역(imprisonment)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죄를 범한 경우 약식 기소에 따라 2,500파운드(표준척도 4)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함
  
- 문서나 진술서에 의해 지불해야 할 관세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모든 환급, 비용, 할인(drawback, allowance, rebate) 또는 의무의 상환과 관련하여 과도한 지급이 발생했을 시 미지급 또는 과지급 된 금액은 정부(Crown)에 대한 채무 또는 민사 채무(civil debt)로 약식 상환됨<sup>150)</sup>

149) 「관세 및 소비세법」 제167조(1)(2)

150) 「관세 및 소비세법」 제167조(4)

## 2) 문서위조

- 다음의 경우 문서 위조죄가 인정될 시 구금될 수 있음<sup>151)</sup>
  - 지정된 사항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필요하거나 관련된 업무의 거래에 사용되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하려 시도하는 행위 또는 위·변조된 문서를 고의로 수용, 수령 또는 사용하는 행위
  - 공식적으로 발행된 문서를 변경하는 행위
  - 이러한 문서의 확인, 물품의 보안 또는 해당 문제와 관련된 다른 목적을 위해 직원이 사용하거나 사용한 인장, 서명, 이니셜 또는 기타 마크를 위조하는 행위
- 상기의 문서위조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시 다음과 같이 처벌됨<sup>152)</sup>
  - 약식재판의 경우 규정된 금액 2만파운드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에 처해짐
  - 기소에 대한 유죄판결 시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이 부과되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에 처해짐
- 제169조 거짓된 측정 등(False scales, etc)에 대한 규정은 법의 개정에 따라 폐지되었음

## 3) 관세회피, 금지물품의 수입 등

- 동법의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provision of the Customs and Excise Acts 1979) 다음 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관세를 포탈하거나 해당 물품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유죄를 선고받고 구금될 수 있음<sup>153)</sup>

151) 「관세 및 소비세법」 제168조(1)

152) 「관세 및 소비세법」 제168조(2)

153) 「관세 및 소비세법」 제170조(1)

- 보세창고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된 물품, 관세 미납 물품,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한 법령에 따라 당분간 금지 또는 제한이 적용되는 물품
  - 해당 물품을 운반, 제거, 보관, 보존, 취급 또는 은폐(carrying, removing, depositing, harbouring, keeping or concealing)하는 데 고의로 관여하는 경우
- 동법의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물품과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든 다음에 대해 회피 또는 회피를 시도한 경우 구금될 수 있음<sup>154)</sup>
-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 법령에 의해 물품과 관련하여 시행 중인 금지 또는 제한
  -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 및 소비세법」, 「조세(국경 간 무역)법」(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 제1부 또는 제40A조 또는 제40B조의 규정 위반
- 「의약품 오사용법」, 「총기법」, 「위조 및 사기법」, 「바다표범 가죽 수입 규정」의 위반으로 본 조에 따른 범죄를 범한 사람은 별도의 규정별 형량이 적용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이 처벌됨<sup>155)</sup>
- 약식 기소의 경우, 규정된 금액 2만파운드 또는 물품 가치의 3배 중 더 큰 금액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에 처함
  - 기소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의 벌금 또는 14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에 처함
- 밀수품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됨
-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되었거나 기타 불법적으로 수입된 것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그렇게 수입되었거나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몰수됨
  - 해당 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공하는 사람은 약식 유죄 판결에 따라 물품 가격의 3배 또는 1,000파운드 중 더 큰 금액의 벌금에 처해지며 구금될 수 있음

154) 「관세 및 소비세법」 제170조(2)

155) 「관세 및 소비세법」 제170조(3)

## IV. 미국과 EU의 소액물품 관련 규제 동향

### 1. 미국

- 2023년 6월 15일 미국에서 발의된 「수입 보안 및 공정화에 관한 법(Import Security and Fairness Act)」<sup>156)</sup>에 따르면 비시장경제 국가나 우선 감시 대상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해당 국가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소액면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해당 물품의 상세정보(HS, 원산지 등)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157)</sup>
  - 비시장경제국은 물품의 가격구조가 시장 원리에 따라 운용되지 않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물품가격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정되는 국가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해당 법안 발표 후 2025년 1월 14일 바이든 정부 후반, 미국 CBP,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는 저가 발송물에 대한 수입(Entry of Low-Value Shipments) 절차 개선 제정안을 발표하였음<sup>158)</sup>
  
- 해당 제정안에서는 소액물품에 대해 강화된 수입 절차(enhanced entry process)에 따라 미국 내 화물이 도착하기 전 위험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분류하고, 행정 면제(administrative exemption)<sup>159)</sup>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CBP가 확보하도록

156) Congress, <http://www.congress.gov/bill/118th-congress/house-bill/4148/text>, 검색일자: 2025. 2. 17.

157)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view.do?seq=369091&page=1](https://www.mofa.go.kr/www/brd/m_26799/view.do?seq=369091&page=1), 검색일자: 2025. 1. 22.

158) Federal Register,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1/14/2025-00551/entry-of-low-value-shipments>, 검색일자: 2025. 1. 23.

규정하고 있음<sup>160)</sup>

- 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에 따른 물품 분류를 포함하여 발송물의 내용물, 출발지 및 목적지에 대한 사전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며, CBP는 적하목록 해제 절차(기본 반입 절차로 명칭 변경 예정)를 수정하여 소액물품의 수입 통관 적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데이터 보고를 요구하고자 함
- 강화된 수입 절차는 19 CFR 10.151(8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에 적용되며, 필요한 데이터 요소를 (1)과 (2)항으로 분류하며 (1)항의 데이터는 모든 선적물에 대해 적용하고 (2)항의 경우 해당 데이터가 있을 시 반드시 전송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 CBP는 데이터 요소의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1)항의 필수 제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음
  - 통관 추적 식별 번호(CTIN), 물품 선적국(예를 들어 A 국가에서 출발한 물품이 B 국가의 보관 시설로 배송된 후 C 국가를 통해 환적된다면 선적 국가는 B임)
  - 물품의 10자리 HTSUS 분류를 제출해야 하며 달리 금지되지 않는 한, 98류 또는 99류 물품도 강화된 수입 절차에 따라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정부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물품은 필수적으로 HTSUS를 제출해야 함
  - 그 밖에 물품에 대한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URL), 제품 사진, 제품 식별자 및/또는 화물의 해외 보안 검색 완료를 확인하는 화물의 엑스레이 또는 기타 보안 검색 보고서 번호가 포함되며, 이 중 하나 이상을 요구하고자 함
- 미국은 19 CFR 10.151을 개정하여 행정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당사자(즉 소유자 또는 구매자)가 19 CFR 143.26(b)에 따른 소액물품 수입 허가를 받은 당사자와 일치하도록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 한 사람이 같은 날 여러 건의 소액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총 금액이 800달러를

159)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행정 면제(administrative exemption)는 800달러 소액물품 면세에 해당하는 내용임.

160) Federal Register,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1/14/2025-00551/entry-of-low-value-shipments>, 검색일자: 2025. 1. 23.

초과하면 면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면제 조건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음

- 반덤핑 및 상계 관세(AD/CVD)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해 면제 대상이 아님을 보다 명확히 하는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 CBP는 수입 허가 집행 목적, 수익 보호 또는 세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든 물품에 대해 일반적인 수입 절차를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트럼프 정부의 First America Policy에서는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은 19. USC. 1321에 따른 800달러 이하 소액면세 제도로 인해 각각 발생하는 관세 수입 손실과 위험을 평가하고, 불법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규정의 개정을 예고하고 있음<sup>161)</sup>
- 트럼프 취임 익일인 2025년 1월 21일, CBP와 재무부, 국토안보부는 8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소액물품 면세에 관련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규정 개정 제정안인 무역 및 국가 안보 조치 및 소액물품(Trade and National Security Actions and Low-Value Shipments)을 발표하였음<sup>162)</sup>
- 해당 제정안은 「1930년 무역법」 제321조(19 U.S.C 1321)에 따라 소액면세가 적용되는 물품 중 100달러 이하의 선물(특정 섬 영토에서 온 선물인 경우 200달러), 200달러 이하의 가치를 지닌 특정 개인 또는 가정용 물품을 제외하고 800달러 이하 소액면세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됨
- 해당 제정안에서 CBP는 제232조, 제201조 또는 제301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포함하여 특정 무역 또는 국가 안보 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한 소액면세를 폐지

161)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america-first-trade-policy/>, 검색일자: 2025. 1. 23.

162) Federal Register,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1/21/2025-01074/trade-and-national-security-actions-and-low-value-shipments>, 검색일자: 2025. 1. 23.

할 것에 대해 제안하고 있음<sup>163)</sup>

- CBP는 현재 제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 201조(Section 201 of the Trade Act of 1974) 또는 제301조(Section 301 of Title III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라 관세가 적용될 수 있는 수입품의 약 16%에 소액면세 혜택이 적용되고 있음<sup>164)</sup>
  - 제301조는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해 대통령이 보복관세 등을 매길 수 있게 하며, 제232조는 미국이 자국 안보와 관련 있다고 판단한 수입 품목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제301조는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기술 이전, 지적 재산권 및 혁신과 관련된 중국의 행위, 정책 및 관행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CBP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소액면세 적용 물품의 약 50%가 제301조 관세가 부과되는 섬유 및 의류 수입품으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미국 「통상법」 제201조는 외국에서 수입된 제품이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시 대통령이 긴급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해당 제정안에서는 제232조, 제201조 또는 제301조 조치의 대상이 되는 저가의 물품에 대해 기본 관세뿐 아니라 조치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를 제안하고 있음<sup>165)</sup>
- 수입 물품에 평균적으로 일반 관세율인 2%가 부과되고 있으나, 중국산 특정 물품에 대한 제301조 관세율은 7.5~100%, 특정 태양전지에 대한 제201조 관세율은 14.25%, 제232조 관세율은 알루미늄에 대해 10%, 철강 공장 제품에 대해 25%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음

163) DIAPIPER, <https://www.dlapiper.com/en-gb/insights/publications/2025/01/cbp-proposes-rule-that-would-eliminate-section-321>, 검색일자: 2025.1. 23.

164) Federal Register,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1/21/2025-01074/trade-and-national-security-actions-and-low-value-shipments#footnote-5-p6854>, 검색일자: 2025. 1. 24.

165) Federal Register,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1/21/2025-01074/trade-and-national-security-actions-and-low-value-shipments>, 검색일자: 2025. 1. 23.

- 2023년 소액물품 면제를 청구한 선적물의 약 77%는 제232조, 제201조 또는 제301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었을 것으로 추산됨
  - 물품에 부과되어야 할 관세율을 적용하면 무역 또는 국가 안보 조치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해 징수할 수 있는 추가 수입의 총액은 2025년에 59억달러에서 78억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추산됨
- 목록통관으로 반입되는 소액화물에 대해 제232조, 제201조 또는 제301조가 적용됨으로써 대량의 화물을 일반수입신고 및 간이신고와 같은 대체 수입절차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며, CBP의 검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sup>166)</sup>
- 현재 목록통관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제한된 데이터로 반입되기 때문에 CBP가 효율적으로 검사하기가 더 어려우며, 해당 소액화물의 적격 여부에 대한 물리적 검사 없이 판단하기가 어려움
  - 해당 제도의 시행 시 수입자는 대량 배송으로 물품을 통합하여 단위당 배송비를 줄이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여 CBP는 여러 개의 동일한 품목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2. EU<sup>167)</sup>

- EU는 세관 당국의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위험물품에 대한 식별, 배송 및 거래자를 확인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UCC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시행하고자 함
-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특히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어 EU로 반입되는 저가의 물품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 EU 무역업체와의 불공정 경쟁이 발생

<sup>166)</sup> 상동

<sup>167)</sup>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3\\_2644](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3_2644), 검색일자: 2024. 1. 21.

하고 있음

- 불법 무역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더 많은 투명성과 신뢰를 제공하는 보다 현대적인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 현재 UCC에는 수입자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자를 제3국의 상품을 유럽연합의 관세 영역으로 반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고, 이를 결정하는 자 또는 수입자로 간주되는 자로 정의함
  
- 해당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아닌 간주 수입자(deemed importer)인 디지털 플랫폼이 모든 통관 절차 및 제세금 지불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됨<sup>168)</sup>
- 2028년 3월 1일부터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B2C(기업 대 소비자) 판매에 관여하는 간주 수입자로 지정된 전자상거래 업체는 물품의 모든 B2C 판매에 대한 제세금 계산 및 송금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sup>169)</sup>
  -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의 가치는 업체가 간주 수입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무관함
  - 판매 시점에 고객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각 회원국에 관세를 납부해야 함
  - 간주 수입자는 늦어도 결제가 수락된 날의 다음 날, 어떤 경우에도 물품이 출시되기 전에 EU로 수입되는 물품의 원격 판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특히 150유로 미만의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EU 역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관세 계산 시 새로운 분류 시스템을 통해 세관 당국이 관세 산정을 위해 물품을 더 쉽게 식별할 수 있어 대량의 소형 패키지로 인한 적체 물량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음

168) Deloitte, <https://www2.deloitte.com/dk/da/pages/tax/articles/proposal-for-the-new-union-customs-code-on-e-commerce.html>, 검색일자: 2025. 1. 22.

169) Forbes, <https://www.forbes.com/sites/aleksandrabal/2024/01/17/beyond-borders-eu-customs-reform-and-e-commerce-platforms/>, 검색일자: 2025. 2. 4.

- 버킷팅 시스템(bucketing system)을 통해 수입자는 물품을 5개의 버킷으로 분류할 수 있음<sup>170)</sup>
    - 0%: 서적, 신문 및 예술품
    - 5%: 장난감, 게임 및 악기
    - 8%: 실크, 면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 12%: 의류, 가죽 제품 및 여행 가방
    - 17%: 식품, 신발 및 유리 제품
  - 버킷팅 시스템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든 상품에 균일한 세율을 적용하며, 따라서 세관 당국은 수입자(플랫폼 운영자)에게 상품 원산지 증빙을 요구하지 않음
  - 다만 상품이 우대 협정에 따라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수입자가 이를 청구하려는 경우 원산지 증빙이 포함된 표준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현재 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제품은 해당 0%의 관세율이 계속 적용됨
  - B2C 전자상거래 상품 판매에만 적용되므로 기업 간 거래에 표준 통관 절차가 적용됨
- 버킷팅 시스템은 부가가치세(VAT) 목적상 원거리 판매에 해당하는 B2C 판매에 적용되며, 소비세, 반덤핑 조치, 반보조금 조치 또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제외됨<sup>171)</sup>
- 철강 제품 등 제73류, 제98류, 제99류의 물품에는 다섯 가지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제안된 버킷팅 규칙에 따라 과세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구매가격으로 결정하되, 제품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총 운송비용을 포함함
  - 결과적으로 거래가격은 EU 고객이 지불한 가격을 반영하게 되며,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발송 송장이나 주문 확인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일치하므로 세관 당국의 검증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170) Forbes, <https://www.forbes.com/sites/aleksandrabal/2024/01/17/beyond-borders-eu-customs-reform-and-e-commerce-platforms/>, 검색일자: 2025. 1. 21.

171) 산업통상자원부, <https://tongsangnews.kr/webzine/search.html>, 검색일자: 2025. 1. 21.

- 해당 제도 개혁으로 EU 집행위원회는 연간 10억유로의 추가 관세 수입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EU 의회는 2024년 3월 세관 개혁에 대한 내용을 채택하였음<sup>172)</sup>
- EU 집행위원회는 머지않아 2028년 3월인 관세 과세 시점 계획을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sup>173)</sup>
  - 2023년 EU 회원국에 무관세로 수입된 150유로 이하 소액물품이 23억개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데다, 화장품, 장난감 등 위험 물질로 신고된 사례가 50%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짐
  - EU 회원국 중 독일은 최근 테무 등을 통해 들어오는 물품은 1일 20만개 수준까지 급증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 규제 강화 목소리를 확대하고 있음<sup>174)</sup>
    - 독일 소비자 단체연맹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독일 「소비자 보호법」을 준수하지 않고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독일무역협회(HDE)는 EU 연방정부의 면세제도 개편 계획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힘<sup>175)</sup>

172) EU 의회,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40308IPR19023/parliament-adopts-its-position-on-major-reform-of-eu-customs-code>, 검색일자: 2025. 1. 21.

173) 산업통상자원부, <https://tongsangnews.kr/webzine/search.html> 검색일자: 2025. 1. 21.

174) 외교통상부, 『경제안보리뷰』, 24-10호, 2024. 6. 7., p. 824.

175) Reuters, <https://www.reuters.com/markets/europe/germany-backs-ending-eu-tax-break-that-helps-shein-temu-keep-prices-low-2024-05-23/>, 검색일자: 2025. 2. 5.

## V. 요약 및 결론

### 1. 요약

- 주요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면제하는 소액면세 제도를 두고 있으며, 소액면세 적용 물품에 대해 간이한 통관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5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하고 있음
  - 미국은 800달러 이하의 수입 물품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소액물품 면세 제도의 폐지에 대해 유보 중임
  - 중국은 허가된 소액 물품에 대해 증치세와 소비세의 70%를 적용하고 있으며, 1회 5,000위안, 연간 2만 6,000위안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음
  - EU(독일 및 프랑스)는 2021년부터 150유로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 2028년까지 소액면세 제도를 폐지하고 다섯 가지 품목군으로 소액물품을 분류하여 관세를 부과할 예정임
  - 영국은 135파운드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 각국이 포탈죄, 밀수죄 등 소액물품에 적용하는 관세 처벌 내용 및 형량을 살펴본 결과, 각국의 법제 체계와 문화에 따라 처벌의 형태와 형량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었음
  - 주요국 중 우리나라만 별도의 법령으로 범죄를 기중 처벌하고 있었음
    - 다만 독일의 경우 「조세기본법」 내에 기중 처벌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 범죄의 경중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처벌하고 있었음

- 영국의 경우 약식과 기소로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었음
  - 중국의 경우 승인된 소액물품에 한해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한적 형태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금액 기준요건을 만족하고, 재범일 경우에 한해 형사 처벌을 적용하고 있음
    - 여타 국가와 달리 전자상거래 물품에 적용되는 간이 및 약식 절차에 따른 행정 위반에 대해 세관의 재량적인 판단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음
  -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은 예비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밀수 관련 처벌에 대해 「형법」의 기준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라 예비의 경우 기수에 비해 경미하게 처벌되거나 감경하여 처벌됨
- 각국이 소액면세와 관련하여 일반 수입물품과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경우 같은 밀수죄에 대해서도 범죄의 의도와 금액의 경중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달리 적용하고 있었음
- 특히 금액이 크지 않거나 범죄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벌을 적용하는 등 상황에 따라 처벌 방식을 구분하고 있었음
-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일반 수입물품에 대한 처벌 규정을 소액물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소액물품과 관련된 범죄 및 세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자체를 개편하는 경우가 있었음
- 관련한 조치로 소액면세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소액물품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음

## 2. 결론

- 소액면세 제도는 무역 활성화와 소비자 편의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국가 세수 손실 및 공정 경쟁 저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각국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 앞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액물품 면세와 관련한 처벌 기준 정비, 각국의 소액물품 제도 변화에 따른 참고사항, 그리고 행정 절차 측면에서 주요국의 소액물품 관련 통관 절차상의 특이 사항 등 향후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을 위해 고려해 볼 만한 내용을 검토해 보았음

### 가. 소액면세 처벌 기준 정비 방안

- 소액물품과 관련된 범죄가 다양하게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는 명의 도용 등 소액물품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개정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다만 소액면세의 경우 일반 수입물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음
- 특히 소액물품 관련 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범죄는 밀수,<sup>176)</sup>로 우리나라는 금액 기준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예비죄도 본죄에 준해 처벌하고 있음
  - 실행에 앞서 예비 행동만 적발되더라도 실행으로 옮겨진 행위와 동일하게 가중처벌 받는 법제에서는 같은 범죄를 기준 금액 이내로 쪼개서 하거나, 예비 행동 단계에서 적발되든 실행 단계에서 적발되든 똑같은 형량이 구형된다는 점에서 범죄를 포기할

---

176) 서론 참조

여지가 적다는 것이 맹점으로 지적되어 있음<sup>177)</sup>

-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으로 인한 범주는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인 밀수 범죄라기보다 일시적인 행위나 생계형 범죄인 경우도 있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범죄 예방 차원에서 가중 처벌의 타당성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
  -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수입신고 준비를 다 해두었으나 목록통관이 되어 버려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사례가 발생함
- 헌법재판소는 2019년 2월,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법」 제6조 제7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헌법재판소는 예비행위는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익 침해나 위험 발생이 있는 기수와는 상황이 다르며, 법익 침해 가능성과 위험성도 차이가 있으므로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 역시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sup>178)</sup>
-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소액물품의 성격을 반영해 가중처벌을 적용하기보다는 소액물품에 적합한 수준의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나. 소액면세 제도 정비 필요성

- 소액물품에 일반 물품과 동일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 중 일부는 소액면세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 및 세수 손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액물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제도의 폐지를 고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177) 『국세신문』, 「수출이든, 수입이든 ... “미실행 밀수 적발 땀 똑같이 증벌 면해야”」, 2021. 12. 27.,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029>, 검색일자: 2025. 2. 19.

178) 『법률신문』, 「“밀수입 예비를 밀수죄에 준해 처벌하는 것은 위헌”」, 2019. 2. 28., <https://www.lawtimes.co.kr/news/151174>, 검색일자: 2025. 2. 19.

- 조사국 중 EU 국가인 독일, 프랑스 및 영국의 경우 2021년부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분리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EU의 경우 2028년까지 소액면세제도의 폐지를 예고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탈세 방지, 행정부담 완화, 세수 보호 및 과세형평 개선 등을 소액면세 제도 폐지 이유로 제시하였음
  
- 2025년 2월, EU 집행위원회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포괄적 툴박스(A comprehensive EU toolbox for safe and sustainable e-commerce)라는 통신문을 채택하고, EU로 직접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제품에 취급 수수료(handling fee)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sup>179)</sup>
  - 해당 통신문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불법·위험 상품의 EU 시장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세관 감독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50유로 미만의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 폐지를 통해 연간 약 10억유로의 세수를 확보하여 EU내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2025년 2월 1일 트럼프 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sup>180)</sup>에 따라 캐나다,<sup>181)</sup> 중국,<sup>182)</sup> 멕시코<sup>183)</sup>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소액면세 폐지 행정 명령을 내린 바 있음
  - 백악관은 해당 조치가 미국으로 반입되는 마약의 밀반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179) EU집행위원회,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e-commerce-communication-comprehensive-eu-toolbox-safe-and-sustainable-e-commerce>, 검색일자: 2025. 2. 24.

180)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181)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imposing-duties-to-address-the-flow-of-illicit-drugs-across-our-national-border/>, 검색일자: 2025. 2. 20.

182)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imposing-duties-to-address-the-synthetic-opioid-supply-chain-in-the-peoples-republic-of-china/>, 검색일자: 2025. 2. 20.

183)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imposing-duties-to-address-the-situation-at-our-southern-border/>, 검색일자: 2025. 2. 20.

## 박힘

- 그러나 해당 행정 명령이 발효된 직후 전자상거래 소매업체, 배송업체, 그리고 CBP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미국 우정국이 중국발 소포의 접수를 중단하는 상황이 초래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2월 5일 소액면제 폐지 명령을 조건부로 연기하였음<sup>184)</sup>
- 미국 상무부 장관은 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관세 수입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징수(fully and expediently process and collect tariff revenue)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후 소액면제 제도를 폐지할 것임을 예고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각국의 소액면제 제도 개편에 대해 우리나라 업체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가 차원에서 소액물품 면제 제도 개편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앞선 각국의 사례를 고려하여 내국세와 관세의 분리를 통한 부가가치세 과세, 목록 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확대(예: 완구 및 어린이용품 등), 1년 총액 한도의 설정, 소액면제 물품 중 요건 확인 품목에 대한 비용 부과<sup>185)</sup>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다. 기타 행정절차상 고려사항

- 간단한 품명만으로 신고하는 목록통관의 경우 브랜드나 모델명 등 물품의 상세 정보가 기재되지 않으며, 특송업체가 품번을 임의로 기재해 신고함으로써 부정 수입 및

184)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amendment-to-duties-addressing-the-synthetic-opioid-supply-chain-in-the-peoples-republic-of-china/>, 검색일자: 2025. 2. 20.

185) 정재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상거래 관련 관세제도 연구」, 『조세재정 Brief』, 통권 제176호, 2024. 12., p. 7.

관세 포탈의 경로가 되고 있음

- 목록통관을 위한 품명 및 HS Code는 수출국의 제조업체나 유통업자가 기재하기 때문에, 수출자가 기재한 통관 목록의 내용과 실물 간의 불일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목록통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HS Code 정보만으로는 불법 및 위해 물품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특히 식품, 의약품, 화장품, 어린이용품 등 안전 및 위생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제품이 국내 시장에 유통되면서 소비자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미국은 Entry type 86에서 HTSUS(미국 통합관세표) 10단위 제출을 요구해 위험화물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통관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저가 발송물 수입 절차 개선안에서도 같은 요구 사항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이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음
- 최근 저가 발송물에 대한 수입 절차 개선 제정안(제정 시 Entry type 86은 종료)에서는 HTSUS 10단위 외에도 제품 사진, 제품 식별자, 발송물의 해외 보안 검색 확인 번호, 엑스레이 등 추가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관세청, 「해외직구 유의사항 Q&A」, 2023. 12.  
\_\_\_\_\_, 「해외직구 불법 수입 608억 원 적발, 11월 '광군제·블프'까지 특별단속 실시」, 보도자료, 2024. 10. 21.
-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관세법』, 2024. 7. 25.
- 김재식, 「관세법상 수출입금지품 관련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창간호, 2000, pp. 87~106.
- 라공우·김희철, 「한국과 중국의 관세형별 규정의 비교 연구」, 『관세학회지』, 제18권 제1호, 2017, pp. 67~87.
- 법무법인 광장, 『관세형법의 개선방안』, 2009.
- 성희현·김성애, 「중국 '관세법' 주요 내용 및 시사」, 『KOTRA 경제통상 리포트』, 제24-4호, KOTRA, 2024. 5. 7.
- 송선욱, 「미국 세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실험 프로젝트 분석과 시사점」, 『관세학회지』, 제23권 제2호, 2022, pp. 165~184.
- 송선욱·엄광열·한상현·최준호·유광현·방성철·신현주,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세행정과 관세사의 대응』, 한국관세사회, 2024.
- 외교부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안보 리뷰』, 24-10호, 2024. 6. 7.
- 이재선·김미정, 『전자상거래 물품의관세 과세상 쟁점사항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10.
- 장효은·손명희, 「주요국 소액물품면세제도 및 통관간소화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관세무역연구』, 제1권 제1호, 2024. 3., pp. 147~180.
- 정재완, 「인터넷으로 구매한 소액 물품 등의 면세」, 『관세와 무역』, 2006년 4월호, 2006.

정재호, 『주요국의 전자상거래 물품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2. 8.  
 \_\_\_\_\_,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상거래 관련 관세제도 연구」, 『조세재정 Brief』, 통권  
 제176호, 2024. 12. 27.

정재호·김미영·김수영, 『주요국의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  
 원, 2012. 8.

정재호·김수영·노영예, 『주요국의 관세법 처벌 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9.

EU Commission, *IMPORTATION AND EXPORTATION OF LOW VALUE CONSIG  
 NMENTS -VAT E-COMMERCE PACKAGE “Guidance for Member States  
 and Trade,”* 2021. 4. 5.

HMRC, *UK Reliefs Document Version 1.7,* 2024. 1. 31.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

국세신문, <https://www.intn.co.kr>.

다롄세관, [http://gongbei.customs.gov.cn/dalian\\_customs/zfxxgk75/460678/34  
 56127/6318845/index.html](http://gongbei.customs.gov.cn/dalian_customs/zfxxgk75/460678/3456127/6318845/index.html), 검색일자: 2025. 2. 4.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11059060>, 검색일자: 2025. 2. 15.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51174>, 검색일자: 2025.2.19.

산업통상자원부, <https://tongsangnews.kr/webzine/search.html>, 검색일자: 2025. 1. 21.

상해세관, [http://shanghai.customs.gov.cn/shanghai\\_customs/xbszn/kajg29/ydd  
 qtjcwptg/2876976/index.html](http://shanghai.customs.gov.cn/shanghai_customs/xbszn/kajg29/yddqtjcwptg/2876976/index.html), 검색일자: 2025. 2. 3.

샤먼세관, [http://xiamen.customs.gov.cn/xiamen\\_customs/grxfcjsfw/4005575/  
 index.html](http://xiamen.customs.gov.cn/xiamen_customs/grxfcjsfw/4005575/index.html), 검색일자: 2025. 2. 15.

영국법률정보서비스, <https://www.legislation.gov.uk>

-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view.do?seq=369091&page=1](https://www.mofa.go.kr/www/brd/m_26799/view.do?seq=369091&page=1), 검색일자: 2025. 1. 22.
- 조세금융신문, <https://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68042>, 검색일자: 2025. 2. 5.
- 중국 국무원,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18-12/31/content\\_5437823.htm](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18-12/31/content_5437823.htm), 검색일자: 2025. 2. 4.
- 중국전문가포럼, [https://csf.kiep.go.kr/consultingInfoView.es?article\\_id=41366&mid=a20400000000](https://csf.kiep.go.kr/consultingInfoView.es?article_id=41366&mid=a20400000000), 검색일자: 2025. 2. 17.
- 지표누리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
- CCTV, <https://news.cctv.com/2024/06/14/ARTIECOMSt7LJY5Z7m7pUDIP240614.shtml>, 검색일자: 2025. 2. 4.
- Congress, <http://www.congress.gov/bill/118th-congress/house-bill/4148/text>, 검색일자: 2025. 2. 17.
- Daniela Coppola(2024), “E-commerce as share of total retail sales worldwide 2021-2027,”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534123/e-commerce-share-of-retail-sales-worldwide/>, 검색일자: 2025. 2. 15.
- Deloitte, <https://www.deloitte.com/be/en/services/tax/blogs/eu-proposal-for-a-modernised-union-customs-code.html>, 검색일자: 2025. 2. 17.
- EU 의회,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40308IPR19023/parliament-adopts-its-position-on-major-reform-of-eu-customs-code>, 검색일자: 2025. 1. 21.
- Forbes, <https://www.forbes.com/sites/aleksandrabal/2024/01/17/beyond-borders-eu-customs-reform-and-e-commerce-platforms/>, 검색일자: 2025. 2. 4.
- Reuters, <https://www.reuters.com/markets/europe/germany-backs-ending-eu-tax-break-that-helps-shein-temu-keep-prices-low-2024-05-23/>, 검색일자: 2025. 2. 5.

Sina, <https://news.sina.com.cn/minsheng/2024-06-18/doc-inazcetr5642655.shtml>, 검색일자: 2025. 2. 4.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america-first-trade-policy/>, 검색일자: 2025. 1. 23.

中国法院网, <https://news.qq.com/rain/a/20240806A022UH00>, 검색일자: 2025. 2. 4.

香港貿易發展局經貿研究, <https://research.hktedc.com/tc/article/MzM1MzIyMjI5>, 검색일자: 2025. 2. 5.

关于完善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监管有关工作的通知商财发[2018]486号,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18-12/31/content\\_5437823.htm](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18-12/31/content_5437823.htm), 검색일자: 2025. 2. 4.

边民互市贸易管理办法 (海关总署第56号令), <http://qingdao.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356574/index.html>, 검색일자: 2024. 2. 3.

CBP, <https://www.cbp.gov/>

DIAPIPER, <https://www.dlapiper.com/>

EU 집행위원회, <https://eur-lex.europa.eu/>

Federal Register, <https://www.federalregister.gov/>

HMRC, <https://www.gov.uk/>

KITA, <https://www.kita.net/>

Post Office, <https://www.postoffice.co.uk/>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B 제3장 7(e) 및 동 협약의 이행지침 제3장 부록 2(e)」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 및 소비세법」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세관 행정 처벌 실시 조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독일 「형법」

독일 「조세기본법」

영국 「관세 및 소비세법(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유럽연합 「신관세법(Regulation (EU) 952/2013, Union Customs Code; UCC)」

유럽연합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5/2446"

유럽연합 「관세감면규정(Council Regulation (EC) 1186/2009)」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중국 「형법」

프랑스 「관세법」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징수 조례」, 2024년 조세위원회 공고 제11호

19 U.S.C.

19 CFR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关于发布「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裁量基准（一）」的公告

关于发布「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裁量基准（二）」的公告

관세연구 24-05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소액물품 수입 위반에  
대한 처벌 및 규제제도 비교연구

발행 2024년 12월 31일

저자 정재호·노영예

발행인 이영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및  
인쇄 (주)세일포커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ISBN 979-11-6655-349-3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